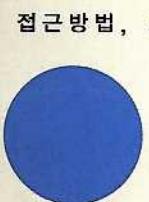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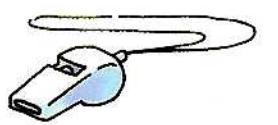


경찰인권교육방법

교육자는 교육대상자의 이해, 요구 및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매뉴얼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참여 학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경찰의 전반적인 조직문화 및 업무의 특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는 직급, 담당업무의 성격, 직무와 관련된 자아상(self-image), 애로점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해당 강좌의 목표, 내용, 방법이 결정된다.

경찰인권교육방법





경찰안전교육방법



경찰인권교육방법

경찰인권교육방법

찍은날 2003년 12월 30일

펴낸날 2003년 12월 30일

지은이 고상준, 김희은, 이승미, 장윤경, 표창원(가나다순)

펴낸이 김창국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대표전화 02-2125-9700)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인쇄·디자인 (주)신생커뮤니케이션(02-2268-5396)

ISBN 89-90475-31-7 03370



책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찰로 거듭나려는 경찰 스스로의 다양한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인권길라잡이－경찰편」 등 인권교육 자료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강사들이 효과적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인권교육방법」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인권교육방법」은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인권교육가용 매뉴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교육가들이 보고 익혀야 할 인권교육의 접근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교육내용은 크게 교육가가 교육실시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경찰인권교육의 기본원리 및 경찰에 대한 이해 부분과 교육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찰의 직무영역과 관련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경찰의 인권 감수성 계발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경찰의 갈등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기획하면서 특히 강조하고자 한 것은 경찰은 계몽과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 수호의 주체 이므로, 인권과 관련된 자신의 인식, 감정, 태도와 업무 수행방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직무 및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을 높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타산지석으로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통해서 경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소규모 참여형 교육뿐만 아니라 대규모 강의나 장기 혹은 단기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교육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별하였으므로 주어진 교육목적과 시간, 규모에 맞추어 세부 활동 안배를 조정하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들이 여기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현장교육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경찰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가운데 제기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교재 발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1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7/12. 2003

경찰인권교육방법

CONTENTS



책을 내면서...	04
<hr/>	
서론 경찰 인권교육	
01 경찰 인권교육의 목표	10
02 경찰 인권교육의 접근원리	13
03 인권교육 교수방법	16
1. 경찰대상 교육 이해 및 효과적 교수설계 모형	16
2.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기법	25
<hr/>	
제 1 부 경찰 이해와 인권침해 문제	
01 경찰 이해	32
1. 경찰(Police)의 개념 및 역사	32
2. 현대사회 4가지 경찰 모델	35
3. 경찰 문화(police sub-culture)	37
4. 한국 경찰의 고충	41
02 경찰과 인권	43
1. 경찰 활동과 인권	43
2. 한국 경찰과 인권	43
3.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사례	45
4. 경찰업무 관련 인권 딜레마 상황과 「경찰관 10대 인권지침」	50

제 2 부 인권보호 프로그램	
01 경찰은 거리의 심판자인가	58
02 유능한 경찰은 누구인가	66
03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73
04 순찰지구대에서	81
05 수사에서의 피의자 인권	90
06 청소년 이해하기	102
<hr/>	
제 3 부 인권 감수성 키우기 프로그램	
01 사람과 함께하는 나의 일, 경찰	116
02 여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합니다	130
03 오늘의 청소년, 우리와는 다르게 성장합니다	139
04 다양성과 차이 존중하기	154
05 경찰을 인권수호자로	165
<hr/>	
제 4 부 갈등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01 의사소통 기술	182
02 협상	197
03 중재	212
04 분노조절	225

서 론

이 책은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교육가용 매뉴얼’이다.
이 책에는 교육대상자, 즉 최종학습자인 경찰에게 제시할 교육자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찰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교육기들이 보고 익혀야 할 인권교육
의 접근방법, 교수내용 및 교육기법 등을 제시하는데 있다.

경찰 인권교육

01 경찰 인권교육의 목표 • 10

02 경찰 인권교육의 접근원리 • 13

03 인권교육 교수방법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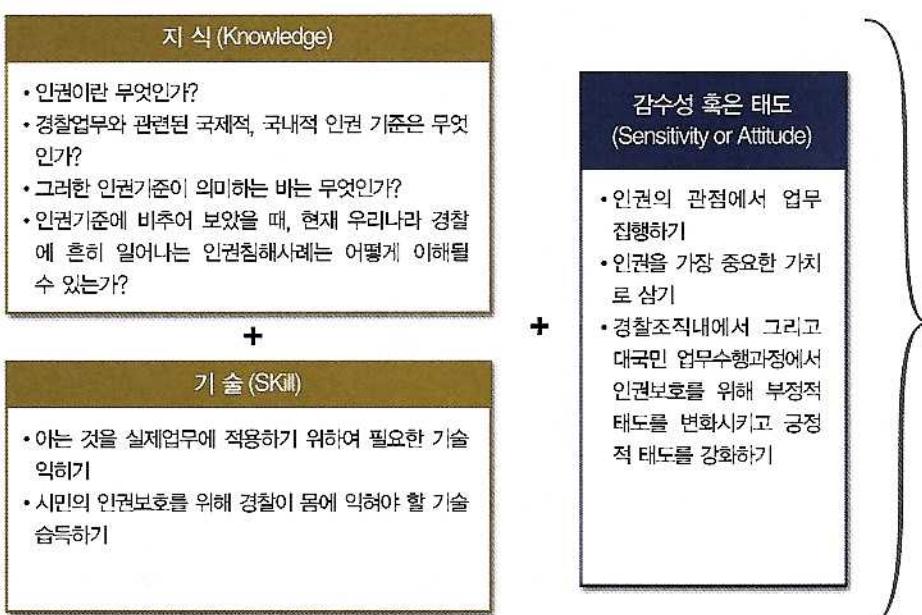
01 경찰 인권교육의 목표

- ① 인권관련 지식을 발전시키기
- ② 인권보호를 위한 기술을 익히기
- ③ 인권감수성 및 인권옹호 태도를 강화하기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해결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옹호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요인으로 크게 국내외적 인권기준을 포함한 인권관련 지식, 인권보호를 위해 몸에 익히고 있어야 할 기술 혹은 기능, 그리고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들 수 있다.



① 인권관련 정보를 알고 지식을 발전시키기

법집행공직자로서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적·국내적 인권기준은 무엇인가를 알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정보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의 기초가 된다.

- 인권이란 무엇이며,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 그것이 왜 중요한가?
- 법집행공직자로서의 경찰이 알아야 할 인권기준은 무엇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UN 인권조약에서 경찰업무와 관련된 인권기준은 무엇인가?
- 예를 들어 무기 및 총기사용 관련한 인권기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인권기준, 청소년이나 여성피의자를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인권기준 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중요한가?
-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어떠한 것이며, 왜 그것이 문제인가? 현재 우리나라 경찰업무 수행과정, 예를 들면 수사, 방범, 경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유형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칙이 어떠한 상황에서 위반되는지 알아본다.

② 인권보호를 위한 기술 익히기

법집행 기관 및 법집행 공직자의 의무는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인권기준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인권규칙을 적합한 행동지침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고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며, 이는 실제 활동 속에서 적용해보고 실천해봄으로써 획득 가능하다.

-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에 익혀야 할 기술은 무엇인가?
- 그러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 및 방법은 무엇인가?
- 실제 생활 및 경찰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떤 강점을 가지는가?
- 예를 들면,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의사소통 기술 및 분노조절 능력은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어떤 훈련과정을 거쳐 습득되는가?

③ 인권감수성 및 인권옹호 태도 강화하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경찰의 의무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체계에 의해 완수된다. 인권보호 행동지침이나 기술 등의 구체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인권보호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하여 경찰 자신과 그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가치체계를 점검해봐야 한다. 그래서 편견이나 차별과 같은 인권보호에 부정적인 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조장하고

강화하는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

-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 및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가?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가? 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경찰업무 수행상 인권침해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나의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조장하는 조직문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실적주의와 조직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내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집행공직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경찰로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Question | Answer

질문 01 경찰대상 인권교육은 대부분 단기간의 교육, 혹은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권옹호 기술이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가능한가요?

기술이나 민감성 혹은 태도형성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달성을 수 있는 목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교육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시간의 교육이라도 효과적인 방법(제2부 참조)을 사용하여 교육생의 감수성을 건드려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장을 나서서 자신의 업무현장에서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질문 02 인권옹호 기술이나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이를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이 매뉴얼은 교육자를 위한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제시되어 있는 방법들을 시뮬레이션과 역할놀이로 교육자가 미리 직접해보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육현장에서 이를 활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03 경찰이 인권교육에 대하여 가지는 반감과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경찰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왜 교육 참가자들이 인권교육에 대하여 불신과 무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쾌감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권워크숍이나 요구조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인권교육이 첫째, 경찰을 인권침해의 기해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 둘째, 경찰 업무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론만을 열거한다는 점, 셋째, 교육시간이 교육이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시간, 예를 들면 교대시간, 비번시간 등에 구성되어 교육에 대한 동기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본 책자의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요구조사에 근거하여 좀더 현장과 밀착된 교육, 경찰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교육, 경찰도 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 및 교수학습방법의 원리들을 숙지하시어 가능한 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02 경찰 인권교육의 접근원리

인권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인권교육에 대하여 취하는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¹⁾. 이러한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본 매뉴얼의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 동등한 입장에서의 상호작용적 접근
- 교육 참가자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실천적 접근
- 감수성을 자극하는 가르침
- 인권 교육과정 설계 및 적용에 있어서의 융통성
- 인권기준제시의 포괄성과 인권교육 기법의 다양성

① 상호작용적 접근

교사-학생 모형을 벗어나 동료간 촉진자 모형

상호작용의 원리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전문 직업집단으로서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서는 기존의 교사-학생의 교수모형을 벗어나 경찰이 경찰과 토론하는 동료집단 모형을 따른다. 그러므로 교육가는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지향성을 가지고 경찰이 직면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촉진자로서의 자기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장지향성을 가진다는 것은 경찰의 실제업무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같은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경찰의 조직문화에 익숙하여 경찰이 가지는 고민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적 접근원리에서 강조하는 교육방법은 참여적 교육방법이다.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정답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하에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경찰이 흔히 제기하는 문제는 ‘그러면 경찰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경찰이 당하는 고충을 알고서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교육자는 도전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바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거리일 수 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당강좌의 도입으로 삼으면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다.

1) 이 접근방법의 원리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경찰인권교육에 대한 권고(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Trainer's Guide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 2002)에 기초하여, 성인교육의 원리를 참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한 것이다.

② 실천적 접근

교육대상 집단의 직급 및 기능에 따른 교육으로 실제 행동의 지침

실천적 접근은 아는 것을 실제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자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실제 생활 환경에서 경찰은 무엇이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인가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그러한 규칙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싶어한다. 이 두 가지 요구 중 하나라도 무시하게 되면 교육은 신뢰받지 못하고 효과적이지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가는 교육대상의 요구에 민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내가 교육할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경찰조직에서 어떤 직급에 있는 사람인지 등에 대하여 교육자는 미리 알아야 한다. 이는 주어진 시간동안 교육을 할 때 어떤 인권문제를 선택하고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직급과 기능에 따라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즉 상급자들에게는 인권친화적인 법집행의 전략과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고, 하급자 교육에서는 실무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특수한 임무, 즉 범죄수사나 공공질서 유지, 혹은 대민업무 등 기능에 따라 교육의 초점을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③ 감수성 자극 접근

행동과 태도의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변화를 촉진

경찰은 직업의 특성상 항상 인권침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기준의 제시와 구체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감성을 자극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기준이나 법규가 분명하지 않은 실무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경찰의 인권적 태도나 감수성에 많이 의존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접근의 교육은 경찰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성차별적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경찰수사과정에서 여성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다양한 국제인권기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유형에서 볼 수 있는 “모욕적인 대우”라는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는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게 어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 그리고 사회 내의 문화적 소수자 집단에 적용하고자 할 때 각기 다른 입장과 활동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④ 융통성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의 융통성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융통성은 교육 참가자의 특성 및 요구, 물리적 공간, 시간 등에 기초하여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융통성있게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교육자는 미리 교육 참가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이에 따라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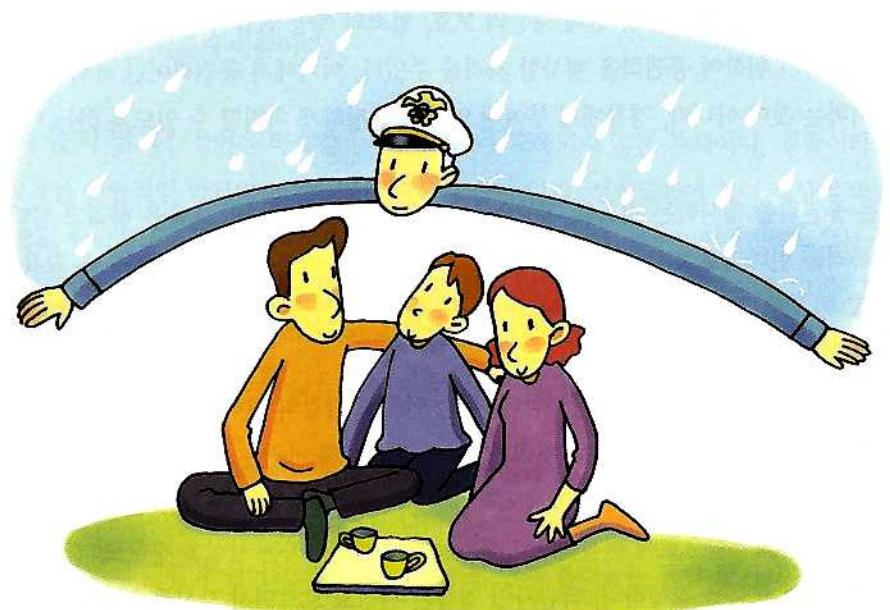
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하는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은 물리적 공간, 시간 등에 대하여 융통성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교육 공간의 모양새, 책상의 배치 등도 이와 관련된다. 그리고 UN에서는 교육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는 기준의 하향식 접근이 학습자의 분노와 무기력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이는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을 차단시킨다. 물론 이는 교육가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경찰교육 전반의 풍토와 관련되는 것이다. 교육가는 주어진 재량 내에서 엄격한 시간엄수를 피하고, 자발적인 질문 및 의견제시를 고무하는 등 강좌 운영에 있어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⑤ 포괄성과 다양성

관련 인권기준제시의 포괄성과 교육기법의 다양성

경찰이 업무활동에 참조할 수 있는 관련되는 모든 인권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2002)가 제작한 “인권 길라잡이—경찰편”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에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부분의 경찰은 장시간의 교실수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에 상관없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 더 못견디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 제시된 다양한 교수기법을 선택하여 학습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03 인권교육 교수방법

어떤 특정주제만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듯이 인권교육만을 위한 교수-학습방법도 있을 수 없다. 본 매뉴얼에 사용된 “다양한 인권교육 교수-학습방법”이란 표현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의 수많은 교수-학습방법들 중에서 특별히 ‘인권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교육방법들을 의미한다. 즉, ‘법’과 ‘적용사례’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이를 숙지하게 하는 교수-학습방법이 한 종류이며, 다른 한 종류는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확인하거나 깨우치며, 변화 및 실행을 위한 결의를 다지게 하는 교수-학습방법이다.

경찰대상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경찰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교수설계방법, 토론 및 조별 활동의 진행방법과 같은 기본기술(Basic Skills)을 먼저 살펴보자.

1. 경찰대상 교육 이해 및 효과적 교수설계 모형

① 경찰대상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설계

경찰에게 우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교통,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을 주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폭력적이고 고압적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부여된 임무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작용을 의미한다.

우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이라는 주제하의 교육을 하려고 한다. 경찰대상 인권 교육의 목적을 한마디로 하면 아마도 “경찰이 가진 권력을 인권수호에 사용하도록 교육한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경찰이 사용하도록 허락된 권리가 아직까지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왜일까? 분명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이유로 경찰의 권력을 다른 데에 사용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비록 어슴푸레 하기는 해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늘 부족하기만 한 인원과 시간,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들, 유치장 구조처럼 쉽게 바꿀 수 없는 여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경찰도, 강사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을 감행하니, 학습자인 경찰은 사정도 모르면서 자신들을 교육한다고 강사에게 맞서고 싶은 심정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강사는 자신들이 손댈 수 없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들 때문에 난감해 하

면서 교탁을 불끈 쥐고 정해진 교육시간을 채운다.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의 인권침해 건수를 줄여보려는 순수한 마음에, 강사는 치밀한 힐난을 준비해서 조심스레 참석자인 경찰들을 몰아붙이고,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맞고 또 때로는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는데도,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또 다시 새삼스레 케케묵은 사례들만 나열하는 강사가 미워 “그러면 정답을 대봐!”라고 정중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경찰대상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차이로 인해 그 태생부터 일반적인 교육설계 모델을 적용하기 쉽지 않게 되어있다.

- 일반적인 시장경제 체제에서 교육은 수요자가 필요해서 교육을 받으러 온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학원에, 몸을 단련하고 싶은 사람이 태권도를 배우러 온다. 그런데 경찰이 “나는 인권침해를 하는 사람이라서 인권교육을 통해 감화와 감동을 얻고 싶다”하고 교육에 참가하는가?
- 일반적인 교육현장에서 강사는 그 과목을 전공한 사람이다. 미술도 음악도 다 그러한데, 인권교육 강사님들은 법을 전공한 분들이거나, 사회에 저명한 인사분들이다. ‘인권’은 어느 학과에서 가르쳐주지?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 수시로 다양한 경로, 즉 교육, 매스컴, 상사, 사회단체 등을 통해 듣고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어떻게 하면 될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며, 교수설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성인교육학의 기초적인 원칙들이 조금은 답답해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탈출구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의 네 가지 제안은 특히 성인대상교육에 대한 것들이고, 나머지 둘은 교사에게 기대하는 원론적 바람이다.

첫째 가르치려 들지 말자! 성인은 학습할 능력은 있으나 교육되지 않는 존재이다. 경찰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인권교육을 일반적인 학교의 교실수업처럼 하려 들지 말자. 성인교육에 있어 강사의 역할은 참석자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진행하는 사회자(Moderator 혹은 Facilitator)이어야 한다. 그는 물론 주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한 선배이고, 또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신념가(信念家)이긴 하지만, 그런 그의 지식과 신념을 대상에게 강요하고 주입시키려 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아하!”와 ‘깨라다임의 전환’으로 가도록, 즉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길을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의 경험을 염두해라! 성인은 일차원의 백지가 아니다. 이미 상당한 자신의 세계가 그려져 있고, 또 삶의 흔적이 상처로, 골로, 뒤틀림으로 남아있는 그런 조형물이다. 이들에게 있어 학습은 때로는 자신의 알고 있는 바에 대한 확인이고, 지식의 차원을 한 단계 올려놓는 돌탑 쌓기이다.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 있어 교육은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이며, 만약 이웃과 동료의 생각이 자신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그러면 그렇지!” 라며 무릎을 치는 확신의 시간이다. 그들의 지금은 과거의 다양한 경험조각이 쌓여진 결과이고, 따라서 이들이 비록 학습자가 되어 무리지어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 줄 것이 많은 선생들인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노리자. 원원효과(Win-Win-Effect)는 협상의 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셋째 그들이 더 많이 말할 기회를 주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교육의 주인은 당연히 학습자이다. 성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떠들게 하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인 산파술에는 학습자는 스스로의 답을 이미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 우리가 원하는 답,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위 정답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는 참가자들 마음속에 들어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답 전체가 들어있지는 않다. 그러나 서로의 답을, 아니 답의 조각들을 맞추어보게 하자.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답!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답! 이제는 공연히 강사 혼자서 힘 빼지 말자.

넷째 교육시간을 놀이의 장 그리고 해방의 장으로 만들어 주자! 성인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따뜻한 마음을 담은 채로 눈과 귀를 통해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왜곡된 습관을 치료하는 시간이다. 호이징가가 주장한 호모루덴스는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다”라는 뜻이다. 심각한 이야기가 있으면 놀이로 풀어보자. 땅따먹기 도중에는 정말 제 땅인 양 심각해도 잠시 뒤 어머니가 부르면 손을 턱탁 벌고 일어나며 “내일 보자!”를 말할 수 있는 놀이를 사용하면 집중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뒤탈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 인권이라는 주제와 함께, 그들 스스로 나중에, 즉 인권교육 시간이 지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인권수호와 인권침해에 민감해지도록, 그리고 그런 예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원론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자. 모든 강사님들이 가진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다. 아낌없이 나눠주자. 인권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법, 그리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법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경청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배움에 늘 목말라 있는 민족도 없다고 하지 않던가. 이런 경향을 이용하자!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한없이 믿는다!**”라고 격려해주자. 연출자가 아무리 우수해도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배우 자신이다.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가르치고, 다양한 과학적인 원리와 이론으로 실행과 평가를 한다고 해도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이는 결국 학생이다. 결국은 경찰이 세상으로 나가, 경찰서로 돌아가 민원현장을 살아낼 때 ‘인권수호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를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다. 허탈한 구호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육은 결국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파종(播種)과 다름이 아니다.

② 모더레이터의 자세

강사의 역할은 참석자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진행하는 사회자(Moderator 혹은 Facilitator)이어야 한다. 훈련된 모더레이터는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한다.

- 모더레이터는 자신의 의견, 자신의 개인적 목표 그리고 자기가 두고 있는 가치를 내세우지 않는다. 동시에 그는 참가자들이 내놓은 의견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옳고 그름의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가치를 주장하는 일, 이런 일들은 전적으로 참가자의 몫이다. 교육이 진행하는 동안 모더레이터에게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다.
- 모더레이터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모더레이터는 참석자들이 이 자신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하도록 도울 수 있다.
- 모더레이터는 무언가를 주장하는 듯한 태도 대신에 질문을 던지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질문을 통해 그는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깨우치고, 학습과 토론에 활력을 불어넣고, 참가자들이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며, 결국에는 주제로 다가서게 한다.
- 모더레이터는 학습자조직 전체나 혹은 참가자 개개인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각종 표현이나 기호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참석자들에게 자신들의 태도를 알아차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참석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마찰이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때 참석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 모더레이터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제와 교육목적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그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 만약 참석자들이 모더레이터의 태도나 발언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항의를 할 때에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그들의 공격과 반발 뒤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 만약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모더레이터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모더레이터로서의 자신과 또 토론참가자로서의 자신을 명확히 분리한다는 사실을 전체에게 밝히고 난 후 의견을 개진한다.

③ 경찰관의 학습을 위한 질문기법

경찰대상 인권교육가는 모더레이터가 되어야 한다. 모더레이터는 방법론의 전문가이지 결코 내용의 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 모더레이터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무언가에 답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보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술이다.

모더레이터는 자신이 던지는 좋은 질문을 통해 :

- ① 참가자 모두가 하나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 ② 구성원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 ③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넘어가야 할지를 가능할 수 있고
- ④ 그때그때의 분위기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 ⑤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질문은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한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질문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자. 중요한 질문의 형태로는 열린 질문, 닫힌 질문, 선택적 질문, 협박성 질문, 암시적 질문, 반박성 질문 그리고 되돌려주는 질문 등이 있다.

| 열린 질문 |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열린 질문이라 한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유로이 답을 할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등의 단어로 시작하는 질문이라 하여 “6하 원칙의 질문”이라고도 한다.

Ex 오늘 우리가 이 회의에서 무슨 주제를 논의해야 할까요?

| 닫힌 질문 | 단지 네 혹은 아니요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 없는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 한다. 따라서 내용이 중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런 닫힌 질문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작업의 체계를 잡고자 할 때에는 닫힌 질문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Ex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 선택적 질문 | 두 개의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회의를 진행할 때 이 선택적 질문을 던지면 참가자가 두 패로 나누게 됨으로 진행자는 이점을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Ex 이 주제에 대해 좀더 논의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 협박성 질문 | 애초에 반대의견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쪽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종종 협박성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이 질문을 사용하면 회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열린 분위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더레이터는 이 질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 우리가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백 년이고 천 년이고 매달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 암시적 질문 | 질문을 받는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교묘히 조작된 질문이라 한다. 이 질문을 사용하는 것은 어설픈 사기로 평가된다. 모더레이터가 이런 형태의 질문을 사용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을 화나게 한다.

Ex 이 주제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는 제 생각에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 반박성 질문 | 모든 질문은 요구적 특성을 지닌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은 질문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즉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 치는 것이다. 받는 질문을 되받아 반복하면 상당히 도발적으로 들리거나 자극적으로 들린다.

Ex “언제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에 대한 반박성 질문은 “그건 왜 물어보세요?” 등이다.

| 되돌려 주는 질문 | 이 형태는 독자적인 하나의 질문형태가 아니라, 질문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이다. 모더레이션 기법에서 이 “되돌려주는 질문”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모더레이터가 내용을 겨냥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 모더레이터는 이 질문을 참석자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용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참석자들이 지기 때문이다.

Ex 만약 “이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회장님, 대표)이야 이야기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을 모더레이터가 받는다면,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라는 되돌려주는 질문을 통해 그 질문을 참석자 모두에게 되돌려준다.

열린 질문의 형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 표는 본래 집단탐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12가지 질문형태(Lippitt, 1969, p.29)였는데, 인권교육을 위한 질문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표 1〉 12가지의 열린 질문

열린 질문의 12가지 형태	
기술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께 나눠드린 사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 경찰관 김씨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경찰과 피의자 사이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 이때 인권을 지켜줄 방법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까?
비교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두 사건의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유사점은 무엇인가요? • 만약 인권수호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역사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수사의 관행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죠? •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나요? • 과거의 사건 중에 올바른 대처였다고 판단될 만한 것은 없었나요?
개념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행동을 인권침해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인권침해로 분류된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요? • 만약 이런 행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 이 행동에 적절한 명칭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인과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이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작용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관계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과 저 사건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 당신은 이 사건이 저 사건과 다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결과로 끝날까요? •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설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 만일 이것이 인권침해라면, 다른 것은 인권수호일까요?
방법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를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나 판례를 어떤 경로로 수집할 수 있습니까? • 관찰된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신뢰할 수 있나요? • 수집된 자료는 타당한 가요?
가치지향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항상 나쁜가요?
관련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요? •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정의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용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이들 예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제시한 정의에 다른 경찰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요?

④ 강사의 특성에 따른 교수설계

방법의 선택 및 교수설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강사가 자신의 특성과 특기를 잘 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우선 한 호흡을 쉬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이 질문 외에도 수 없이 많은 질문이 더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

- 나는 본래 놀이적인 성향이 강한가?
- 나는 성대가 강한가? 아니면 마이크가 필요한가?
- 나는 노래는 잘하나?
- 나는 귀신 이야기를 잘하나?
- 나는 춤을 잘 추나?
- 나는 논리에 강한가?
- 나는 사투리를 쓸 때 더 전달력이 뛰어난가?
- 나는 프리젠테이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가?

이런 질문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 전통적 강의방식 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그 방법을 택해야 한다. 역사 아래 수없이 많은 교수법이 등장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대단한 교수법이라 자신하며 또 다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코 강의 교수법이 석권하고 있는 자리를 뺏을 수는 없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다른 세계로 이끌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는 놀라운 강의를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들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

⑤ 교육의 환경적 특성을 극복하는 교수설계

■ 미리 들어가라! 그리고 먼저 말을 걸라! – 시간적 환경의 극복

테니스 선수와 성악가는 본 게임과 연주가 시작할 때야 비로소 코트와 무대에 들어선다.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시작하는 종이 치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로 향하는 버릇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회성 교육을 진행하는 인권교육 강사들은 가능하면, 아니 반드시 시작종이 치기 20분전에 강의장소에 들어가서 미리 참석자들과의 마음열기(Icebreaking)를 시작해야 한다.

말을 걸어라. 편안하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가능하면 많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강사 자신 사이의 공통의 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최선을 다하여 찾아라.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성공을 보장하는 양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 계산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유유자적 미소 지으며 환답을 나누는 한 마리 백조가 되어 참석자 사이를 헤엄쳐라.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만약 플래카드를 가지고 갔다면 거는데 도와달라고 하라. OHP를 사용하여 한다면 잘 보이는지 물어보라. 마이크가 울리지 않는지, 조명이 침침한 것 같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지는 않느냐며 창을 열어보라고 도움을 청해보라. 그러면 교육시간 내내 그들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과 눈이 맞추질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어줄 것이고, 어설픈 농담에도 큰 웃음으로 답할 것이며, 만약 당신이 마른기침이라도 하는 양이면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일어나 음료수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음악을 사용하라! – 음향적 환경의 극복

어려운 곳이 더 많겠지만, 만약 공간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참석자들이 교육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그 곳에 음악이 흐를 수 있게 하라. 이 때 주의할 일은 음악의 선곡이다. 많은 경우 피아노나 교향곡과 같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 놓는데, 만약 클래식을 선택하려면 가볍고 귀에 익숙한 곡을 조금 크게 틀어놓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요나 팝송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음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색함을 없애준다. 특히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묻힐 정도의 음악은 사람들의 입을 쉽게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런 효과를 사용하려면,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조별토론이나 파트너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사족같지만, 토론의 열기를 식히려면 느리고 부드러운 음악을, 반대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촉발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빠른 음악을 사용하라. 예를 들어 약 3분 정도의 음악을 틀어주면서 “지금부터 옆 사람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 시간은 지금 나오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입니다.”라는 방식으로 음악을 사용하여 토론의 시간적 길이를 제시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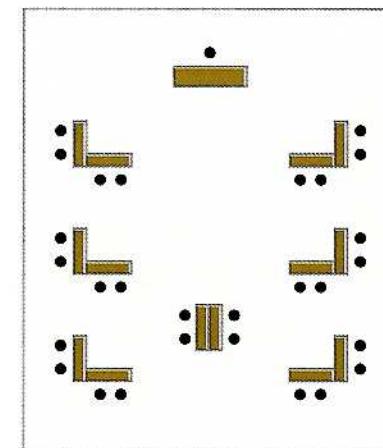
■ 가능하면 좌석배치를 바꿔라!

음악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아니 현실적으로 가능성에 적은 요구가 “경찰대상 인권교육에서 좌석배치를 바꿔라!”일 수 있다. 하지만, 비록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그 개념과 필요성만은 강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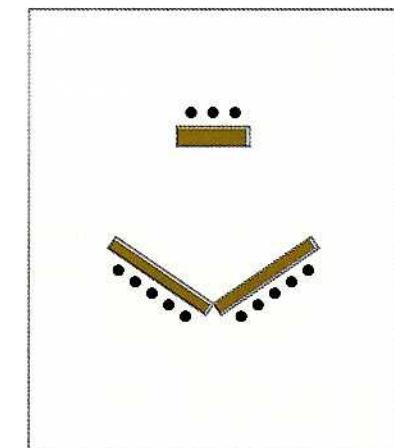
비판적 사고는 잠시 접어 책상 속에 집어넣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사의 말과 전달되는 내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무조건적으로 눈에, 귀에 그리고 머리에 집어넣는 학교 학생시절의 수동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좌석배치를 바꿀 필요가 있다. 마치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걸치면 순식간에 흐트러진 행동과 말투를 구사하는 것처럼,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성인들이 교실식 공간에서 책상 앞에만 앉으면 독립적 사고를 멈추고, 수동적인 자세가 되며, 궁금한 것이 없어지게 되는 모습을 성인교육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교실과 같은 분위기를 없애기를 권한다. 좌석배치를 바꾸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음악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처럼, 좌석배치는 공간을 생소하게 느끼도록 해주

며, 그 결과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성인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좌석배치 중에서 다음의 두 가지 좌석배치를 실험해 보기 권한다. <그림 1>의 자석배치는 조금의 변화만 가하면 되지만, <그림 2>의 형태는 손이 많이 간다. 하지만 그 효과는 훨씬 강력하다.



<그림 1>



<그림 2>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좌석배치는 의사소통을 위한 강사의 의지이다. 참석자와 많은 의사소통을 원하는 강사는 책상을 치우고 참석자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할 것이고, 참석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싶은 강사는 참석자들이 자신을 향하게 앉히기 보다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시킬 것이다. 강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좌석배치에 이런 의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도구를 그 동안 무엇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2.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기법

① 프리젠테이션 기법

다음의 4단계 점검은 강의에 앞서 자신을 점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강의경험이 적은 분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강단에 선 횟수가 많은 강사에게도 자신의 강의 준비 정도를 점검하는 시점에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언가에 숙달된다는 말은 때때로 원칙과 기본에서 벗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변화와 신선함이 떨어지고 구태의연함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점검 01 기본준비

-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의 논지와 근거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나아가 그에 반대되는 논지와 근거까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 학습자, 즉 경찰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업무와 특성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들이 교육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 '경찰대상 인권교육'의 배경을 살펴보았는가? 무슨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 인권교육을, 그것도 경찰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가 수중에 있는가? 만약, 교육이 진행되는 도중에 논쟁이나 토론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논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례가 준비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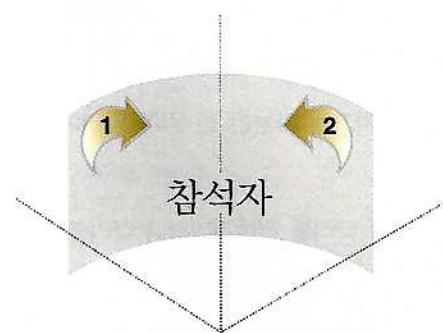
점검 02 전력개발

- 이번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권에 대한 법적이고 규범적인 정보 및 정의의 전달인가? 아니면,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려는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하는가? 주된 내용이 강사 자신의 의견과 판단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이야기인가? 제시할 대안이 있는가?
- 강의의 체계가 만들어 졌는가? 예를 들어 "1, 2, 3" 혹은 "a, b, c", "한편에서 보면, 다른 한 편에서 보면" 혹은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와 같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치했는가? 혹시 너무 많은 갈래를 세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 어투와 단어사용에 있어서 경찰이라는 학습자를 감안하였는가? 지나치게 자주 외국어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직업이 경찰인 학습자가 공감하는 예화는 준비되어있는가?
- 실제적 사건과 현실에 초점을 맞추자. 나는 전문가다 라는 마음자세로 자신 있게 준비하면, 실제 강의에 있어서는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객관성, 실용성,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 청중과 나를 묶어주는 공동의 토대가 있는가? 직업이 경찰인 학습자와 강사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이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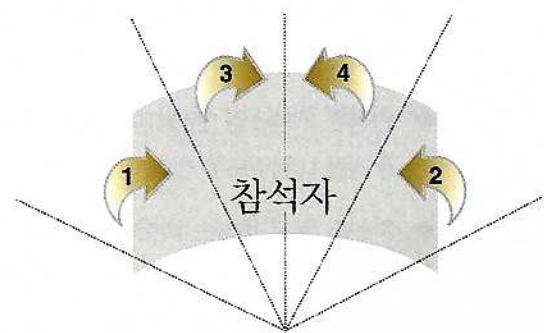
- 공격적 전략을 세웠는가? 어느 지점에서 "제 생각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훔들어 놓을지를 계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순서대로 쌓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 적절한 유머와 농담은 준비되었는가? 이 또한 토론내용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적시에 사용해야 한다. 유머는 지역이나 교육조건에 따라 그리고 참석자의 성별에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라. 아무런 사전준비나 배려 없이 특정한 개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농담을 하지 않는다.
- 만약 학습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무시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점검 03 편안한 교육 분위기 조성

- 첫인상이 중요하다. 옷 매무새나 화장 등에 신경을 쓰고, 혹시 강사의 특이한 목걸이나, 빼빼 어진 넥타이, 멀 잠긴 지퍼, 치아에 물어나는 립스틱 등으로 교육에 집중도가 떨어지지는 않는지 생각하라.
-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라. 교육장에 시작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석자들과 대화를 시작하라. 일상의 이야기, 나눠 마시는 커피, 아이들 이야기, 건강에 대한 고민, 이런 모든 것이 강의에 대한 호응도를 높여준다.
- 공동의 관심사를 강조하라. 미리 받은 참석자 명단, 기획자를 통해 얻은 참석자들에 대한 정보, 교육시간 전의 대화 등을 통해 강사와 학습자를 묶어주는 끈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강의에 드는 수고는 아마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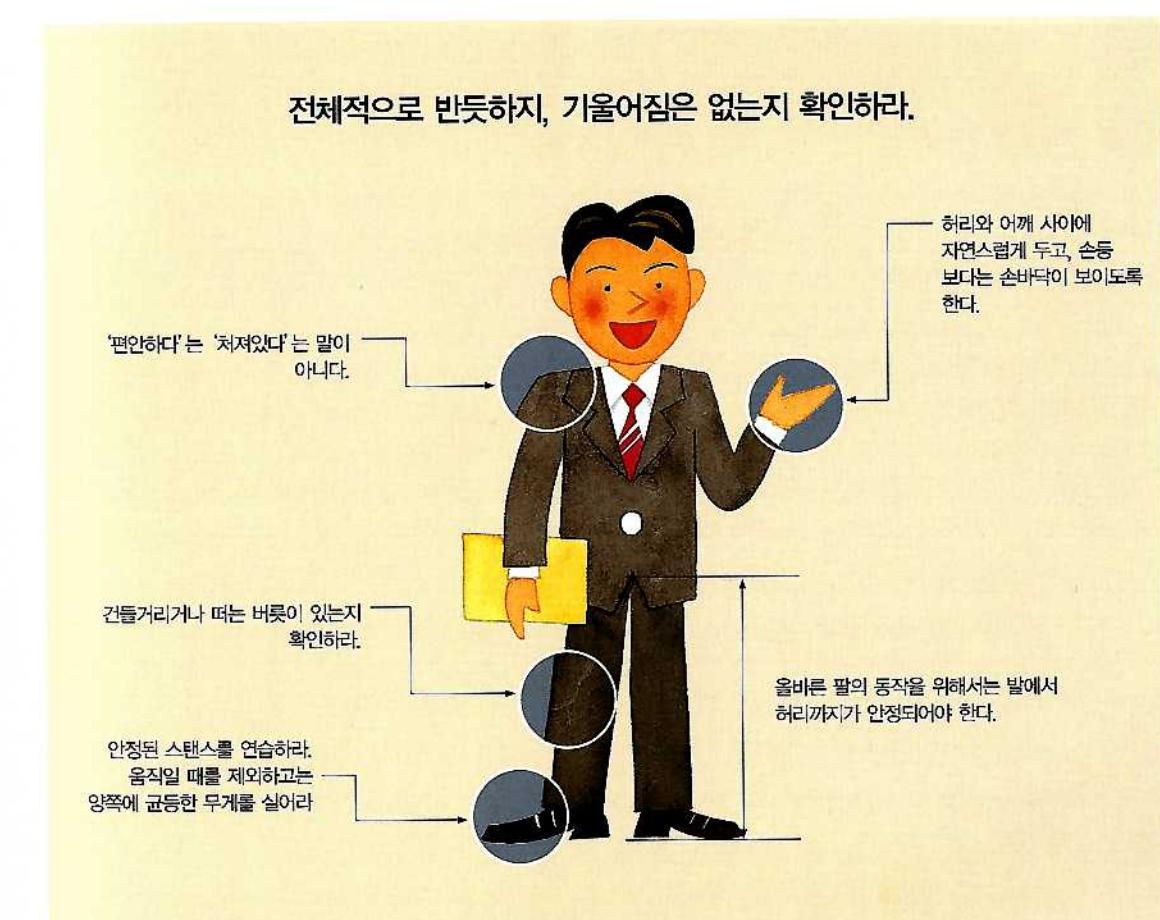
<그림 4>

- 도입부에서 이미 학습자가 알아차릴 정도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짓는 방법은 피하라. 호기심을 부추겨라. 없는 호기심도 만들어야 할 판에 미리 결론을 알려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 의도적으로 시선맞춤을 하라. 강사가 정보와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언어만이 아니다. 특히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는 진정어린 시선이 중요하다. 시선은 또한 참석자들에게 사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중시간을 배가 할 수 있다. 시선맞춤은 자유로우며, 기坦 없고, 솔직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면, 시선을 좌측 열 맨 앞에 앉은 사람에서 시작하여, 중앙 열 맨 끝에 앉은 사람으로 천천히 옮긴 다음, 다시 시선을 가장 오른쪽 열의 맨 앞 사람에게로 옮겨오는 연습을 하라. 참석자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전체를 2등분하여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가고, 참석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전체를 4등분하여 <그림 4>와 같이 시선을 바꾸면 된다.
- 돌발 상황이 딱치더라도 평상심과 침착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때로는 참석자가 강사의 화를 돋우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동요하지 않는다.
- 칭찬에 주의하라. 그리고 칭찬의 사용에 주의하라. 참석자나 기획자의 칭찬이라는 일차적 평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긴장이 풀리게 되고 자만하게 된다. 그 결과 강사는 오감을 사용한 관찰을 중단하는 치명적인 문제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점검 04 자세와 동작

- 정돈된 외모와 예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올바른 몸의 자세이다. 자신이 서 있을 때 몸의 자세가 반듯한지, 기울어짐은 없는지 확인한다. 이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 편안하다 혹은 긴장이 풀어졌다는 표현이 몸을 그냥 막무가내로 내버려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깊은 호흡을 사용하는 강사들은 적당한 육체의 긴장이야말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을 것이다.
- 안정된 스탠스를 연습해야 한다. 움직일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무게를 나눠주도록 한다.
- 자신도 알지 못하는 버릇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한쪽 다리를 건들거리거나 다리를 떨지는 않는가?

- 올바른 제스처 즉 팔의 동작을 위해서는 발에서 허리까지가 안정되어야 한다. 이 또한 연습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다. 강사로서 가져야 할 기술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 많은 사람들이 팔과 손 처리를 못하여 찔찔맨다. 양 팔은 허리와 어깨 사이의 공간에 보기 좋게 두어야 한다. 지나친 강사의 긴장은 참석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 제스처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 교육공간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펼쳐라. 자신의 신체에 비해 지나치게 작거나 큰 움직임, 교육장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었거나 소극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강사가 사용하는 지시봉도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라. 지나치게 긴 혹은 너무 짧은 지시봉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 1 부

이 장은 경찰인권교육 매뉴얼의 전제이자 배경에 해당하는 참고자료 부분입니다. 인권교육 강사들이 경찰과 경찰이 처한 상황 및 경찰업무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의 본질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첫 부분은 '경찰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교육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둘기 위해 '경찰(police)'이라는 개념과 그 기능 및 역할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서술하고, 오늘날 경찰의 기본적인 역할 내지 이미지에 대한 4가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살펴본 후, 한국 경찰조직에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하위문화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찰하위문화'는 한국 경찰에만 존재하거나 최근에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경찰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세계 경찰이 공유하는 하위문화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한국 관료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립성 및 독립성의 부족 등 한국경찰이 처한 현실에 대해 살펴본 후 여전의 불비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등 한국 경찰관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고충에 대해 기술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경찰과 인권'입니다. 경찰과 인권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국경찰은 특히 그 동안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가, 그동안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딜레마 상황 몇 가지를 선정하여 제시한 후 그 해결책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경찰관이 지켜야 할 10대 인권지침」을 제시해 보았다.

이 장의 내용은 인권 강사 중에는 경찰과 경찰업무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에, 경찰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강사분들에게 맞추어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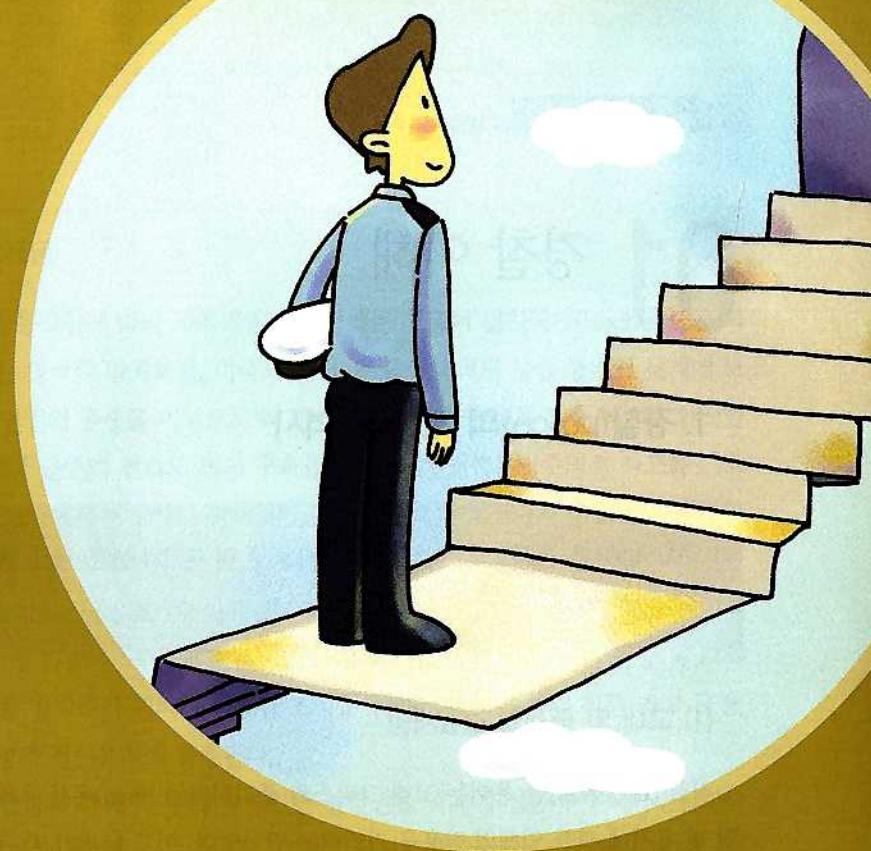
이울러, 내용 중 일부는 시각과 견해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교육 중 마주하는 경찰관들로부터 이의와 반대가 제기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경찰 인권 침해 사례나 현행법규와 인권지침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권교육교재인 「인권길라잡이-경찰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경찰 이해와 인권침해 문제

01 경찰 이해 • 32

02 경찰과 인권 • 43



01 경찰 이해

1. 경찰(police)의 개념 및 역사

경찰의 역사는 체제수호와 사회질서 유지 도구 대 개인의 생명, 재산, 권리 보호 기능 사이의 균형 잡기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1) 고대 및 중세의 경찰개념

경찰(police)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티아(politeia)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도시국가(polis)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일체의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후 14세기 말 프랑스에 와서 국가목적·국가작용·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경찰(la police)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15세기 말에 독일에 계수되어, 종래 봉건제후의 통치권으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재판권(ius quaesitum), 입법권(ius legislatorium), 과세권(ius fisci) 등 영주고권(領主高權)의 체계에 경찰권(ius politiae)이 접목되어 교회행정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경찰(Polizey)이라고 부르게 되어, 경찰권은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가 되었으며, 세속적인 공권력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2)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

이후 독일에서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차츰 외정·군정·재정을 위한 특별한 관청이 설치되고, 사법도 국가의 특별작용으로서 다른 국가작용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찰은 이러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 즉 사회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무행정의 전반을 의미하기에 되었다. 그리하여 국왕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는, 이른바 경찰국가(Polizeistaat)적 행정이 전개된 것이다. 당시 관료는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대신, 국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관계에 간섭하고 지배하는 체제가 갖추어지게 된다. 국가는 소극적인 치안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이를 실현시키는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이러한 강제력으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인 국가권력이 다름 아닌 경찰이었기에 경찰은 독재 권력의 도구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3) 법치국가시대 이후의 경찰개념

경찰국가는 18세기에 계몽철학이 등장함에 따라 극복되었고 유럽에는 새로이 법치국가(Rechtsstaat)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법치국가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프랑스 대혁명 등을 통해서 세계에 보급된 입헌정체가 자연법에 근거한 인권의 존중을 이념으로 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목적과 임무를 한정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생성에 따라 군주의 권력도 법의 구속을 받게 되는 권리분립주의적 사고를 기초로 하는데서 출발한다. 과거 경찰국가하에서는 국왕의 절대적인 경찰권의 객체에 지나지 않았던 시민이 그 주체성을 회복하고, 경찰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복지경찰(Wohlfahrtspolizei) 분야가 제외되면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방지(Gefahrenabwehr) 분야에 한정되게 된다. 특히, 1794년 제정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Pr. ALR) 제10조 제2항 제17호는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규정, 법률로서 경찰의 직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한정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나치정권의 등장과 함께 각 주에 속해있던 경찰권을 국가에 집중하여 국가경찰화하고(1936년), 형사경찰과 비밀국가경찰을 포함하는 보안경찰, 그리고 질서경찰(Ordnungspolizei)과 돌격대를 합쳐 국가치안본부를 설치하여(1937년) 온갖 포학을 자행하게 된다. 2차대전 종전 후 연합국은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독일 경찰의 탈나치화, 탈군사화, 비정치화, 민주화 및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혁명정책의 하나로 삼았다. 그 결과 종래의 국가경찰은 주 경찰로 다시 회복되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법과 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과 겸기 이외의 모든 행정경찰 사무는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되어 질서행정이라는 분야로 관장되게 되는 이른바 비경찰화(Entpolizeilichung)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축소된 경찰개념은 1986년 독일연방 및 주의 통일경찰법 표준안 제1조 제1항의 규정, 즉 「경찰은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명백하게 정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4) 영미에서의 경찰개념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들에 있어 경찰은 국가통치기구로서의 의미보다 주민의 대표, 주민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의미가 강한데 이는 그 역사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영국의 경찰은 고대 앵글로색슨 시대 아래로 주민 자체 치안(self policing)의 철학과 문화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영국에서 경찰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콘스타블(Constable)은 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자치치안의 대표자에서 유래한다. 지역 귀족 내지는 왕이 파견한 중앙 귀족인 사법관(shire-reeve)에 의해 평민 치안수행자인 콘스타블은 주민이 선출한 마을 자치치안의 대장으로 범법자의 추적과 체포 및 마을 전체의 말과 무기 관리의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콘스타블의 주 임무는 범법자를 체포하여 법정에 데려오는 것이었는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시민체포권(citizen powers of

arrest)을 콘스타블에게 특별히 강조하여 요구하게 된 것이었으며 도시 지역의 콘스타블은 야경꾼(night watch)을 지휘하면서 예방순찰체제(preventive system of patrol)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콘스타블은 당시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치안조력의무(the hue-and-cry, 범법자를 보면 소리치고 그 체포에 동참해야하는 의무)를 통해 합법적으로 시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대응을 명령하고 강제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주민의 대표이며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띠던 콘스타블은 1361년 재판관법(the Justice of the Peace Act 1361)의 제정과 함께 왕이 파견하여 지역주민을 다스리도록 한 하류 귀족 출신인 재판관(the Justice of the Peace, 지금의 치안판사 magistrate)의 수하로 전락하면서 본래의 치안업무보다는 자질구레한 법원과 재판관의 심부름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점차 자원봉사자가 아닌 유급종사원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층민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콘스타블 업무는 평민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었으며 돈이 있는 자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 콘스타블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여 18세기 말에 와서는 극도로 무능·부패한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타락하고 무능한 제도로는 산업혁명 이후의 혼란한 사회치안을 감당할 수 없어 1829년 로버트 펠(Robert Peel)에 의해 관료제적 직업경찰관 조직인 런던 경찰청이 창설되었는데, 오늘날 영미법계 국가 경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준군사적 조직인 경찰의 창설이 사회에서 얼마나 인기가 없는 일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로버트 펠은, 새로운 경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과 의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간파하여 다음과 같은 지휘지침을 공포하였는데 이 지침들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 경찰의 첫째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다. 이러한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경찰의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범법자의 범행 후에 그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경찰자신의 안전에 더욱 효과적이다.
- 경찰관은 계급과 계층을 망라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특히 그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부주의로 인해 또는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일단 경찰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호한 용기로써 대처하여야 하는데, 올바르고 정당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다.
- 경찰관은 완벽하게 자기 기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어떠한 육설이나 위협 등에도 동요되어서는 안 되는데, 조용하고 단호한 태도로써 그러한 상황에 대처한다면 다른 시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창설중인 경찰의 신성함에 비추어,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임무와 권한에 잘못된 관념을 형성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경찰은 그 시작부터,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시민을 이해하며, 시민과 같은 편에 서며,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는 일관되고 민주적인 조직체를 지향한다.
- 경찰은 침착성, 용기, 유머감각, 공평무사함 등으로 주민들의 칭찬과 사랑을 얻어야 한다.

(5)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념

위에서 살펴 본 프랑스와 독일의 경찰개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찰개념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프랑스법이 일본 명치시대(1875년)의 행정경찰 규칙의 모범이 되었고, 이것이 1894년 행정경찰 장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일본에서는 1947년의 경찰 관등 직무집행법,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기까지 각각 존속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종래의 대륙법계의 치안유지중심의 행정경찰적 관점이 강조되던 입장으로부터, 영미법계의 민주주의적 이념에 따른 경찰개념이 강조되면서 「국민(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경찰법 제1조)가 경찰의 책무로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같은 내용의 규정이 삽입되었다.

2. 현대사회 4가지 경찰 모델

오늘날 경찰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논자에 따라 실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학계에서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범죄와 싸우는 전사, 응급조치자, 사회적 힘의 집행자 및 사회평화유지자 등 크게 4가지 경찰역할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모델은 나름대로 경찰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인권차원에서 살펴보면 나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 범죄와 싸우는 전사 (the crime-fighter)

경찰은 범죄퇴치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경찰모델이다. 이러한 경찰모델에서는 범죄자와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진짜경찰'이라고 보며 경찰이 처한 사회상황을 마치 전투상황처럼 인식하여 사람들을 범죄자나 경찰비판자 등 '적'이 아니면 경찰에 우호적인 '우리 편'으로 구분하는 강한 이분법적 사고가 형성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흑백논리적 경찰모델 하에서는 과실범이나 민원인, 집회시위 참가자, 단속 대상 등 '적'도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닌 다양한 경찰대상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대응태도를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점 역시 대두된다. 아울러 경찰이 범죄와의 싸움에 전념하다보면 누명을 쓰거나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법집행 현장부근에 있다가 부상을 당하는 등 무고한 희생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실제 현실은 경찰업무의 극소부분만 범죄자와의 물리적 충돌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예방, 민원인 대응, 갈등조절, 지역사회 평화유지 등 문제해결기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때로는 경찰력 강화가 곧바로 범죄문제 해결이라는 지나친 기대가 사회에 조성되어, 경찰관 수의 증가 및 장비의 보강 등 경찰력이 강화된 후에도 범죄발생이 증가할 경우 경찰의 무능과 비효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

게 되는 문제 및 경찰의 집행방법이 강력해질수록 범죄 방법 역시 흥포화 될 가능성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범죄와 싸우는 전사 모델은 액션과 폭력성 등 경찰업무에 있어 남성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화와 조정, 갈등해결 등 여성적 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문제 또한 내포하고 있으며 마치 전장에서 형성되는 전우애와 유사한 동료에 내지 충성 문화가 조성되어 동료의 부정부패나 인권침해 등 비리행위를 목격해도 이를 못 본 체하거나 감싸주는 것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도 있다.

(2) 응급조치자 (the emergency operator)

경찰은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의사, 교사, 법조인 등)가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러한 전문가의 공백상황을 일시적, 임시방편적으로 대체하는 존재라고 보는 경찰모델이다. 이러한 경찰모델에서는 경찰이 부여받은 권위와 권한이 전문기술의 산물이기보다는 전문가 대신 24시간 내내 근무하는 조직체제와 방방곡곡에 퍼져있는 지역적 포괄성으로 인한 파생적 산물이다.

이러한 경찰모델은 경찰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비하게 되고, 경찰관이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되어 전반적으로 경찰관의 사기가 낮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직업윤리와 직업의식이 약화되어 인권침해와 부정부패 등 비리 유혹에 취약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사회적 힘의 집행자 (the social enforcer)

경찰은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로 보는 경찰모델이다. 즉, 경찰을 법의 집행 등 사회적 문제해결 시도에 대한 저항(시위, 농성, 범죄, 무질서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리력과 권위를 사용하는 존재로 봅니다. 이러한 모델은 범죄퇴치 뿐만 아니라 단속, 시위진압 등 다양한 경찰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설명해주며 경찰이 모든 종류의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을 공동체의 강압적인 힘의 저장소로 규정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경찰권의 강압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경찰업무의 처리방식에 있어 힘과 위협을 통한 문제해결 경향을 영속화하려 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모델 하에서는 경찰관이 시민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중재 보다 힘, 협상 보다 위협을 사용하는 관행이 형성되기 쉬우며 폭력의 정당화 내지 인권침해의 합리화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4) 사회평화 유지자 (the social peace keeper)

가장 현대적인 경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란 민주적인 정부의 정상적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복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간접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합법적 목적

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본다. 이러한 경찰모델은 영국경찰의 창시자 로버트 필의 경찰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는 “경찰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는 범죄와 무질서의 진압과 엄한 처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찰모델 하에서는 경찰이 범죄와 무질서를 억제하고 공포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조장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경찰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소극적(reactive) 기능만이 아닌, 미연에 문제발생 여지를 줄이고 없애는 적극적(proactive) 문제해결자(problem-solver)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이러한 경찰모델에서는 경찰업무의 평화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힘은 오로지 필요 최소한도로 쓰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개개인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야 하며, 경찰관 개인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다만, 이러한 현대적 경찰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개혁되어야 하고 일선 경찰관에게로 권한이 대폭 위임되어야 하고 경찰관의 선발, 교육 및 처우에 있어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3. 경찰 문화 (police sub-culture)

경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다음 체계도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경찰에는 한국의 사회문화와 한국 관료 행정문화 및 경찰이라는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비롯되는 직업문화가 함께 뒤섞여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국 경찰 문화를 살펴보겠다.

(1) 권위주의 (權威主義)

평등의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배, 복종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다.

(2) 가족주의 (家族主義)

공적 조직도 가족의 한 형태로 생각하려는 의식구조이다. 마치 서장은 아버지, 과장은 어머니, 계장은 형과 같이 생각하는 의식이다. 조직구성원 간에 화합과 계층적 질서가 강조되지만 공사 간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연고주의 (緣故主義)

혈연, 지연, 학연 등 배타적이면서도 특수한 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연고주의로 인해 조직 내의 출신 간 갈등이 심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문제의 공정성에 의문과 시비가 항상 발생한다.

(4) 의식주의 (儀式主義)

실리보다는 형식, 절차, 선례(先例)에 집착하려는 성향이다. 실질적 책임보다는 형식적 법적 책임이 강조되고, 선례 담습주의(先例踏襲主義)가 성행한다.

(5) 정적 인간주의 (情的 人間主義)

인간관계를 이해타산이나 직무관계로 보지 않고 정의 유대관계로 보려는 성향이다. 상하간의 관계가 직무 대 직무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인식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더욱 많이 작용한다.

(6) 운명주의 (運命主義)

개인이나 조직의 성공 여부가 외부적인 힘이나 영향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 하에서는 승진 등 성공을 못했을 때는 운이 없어서이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변명과 책임전수가 많이 발생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지도자보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더 환영을 받는 원인이 된다.

(7) 일반주의 (一般主義)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구조이다. 세상만물은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에서 다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다.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권한의 위임이 일어나지 않고 전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8) 관직이권주의 (官職利權主義)

경찰직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출세와 이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경찰직은 다른 일자리와 달라 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태도인데,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경찰은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라 이권을 확장하고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더 큰 이권이 개입되는 자리를 찾기 위해 늘 경쟁하게 된다. 경찰직을 특권시하는 사람은 민간 영업자나 다른 직업을 떠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9) 비밀주의

경찰 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비밀유지를 경찰관련 사항 전체로 확대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외부에서 경찰 내부를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알려지는 내용들이 경찰에 불리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태도는 경찰관의 단합을 강조하는 데로 이어진다.

(10) 일반 시민사회로부터의 단절

법 집행자로서 경찰관들은 그들의 고객인 시민과 함께(with)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치해(over against) 있는 인간행위의 감시자들로서 이해되는 업무의 성격상 시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늘 발생한다. 경찰관들은 빈번히 그들의 법집행과정에서 시민의 구성원들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해 만약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결국 의지할 곳은 다른 경찰관들 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사회생활과 교제의 자리에는 간혹 법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경찰관이 있다는 것은 그 경찰관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관들은 자신의 직업상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사교적인 성격의 모임이 상담이나 불만을 털어놓는 기회로 변하게 됨을 종종 발견하게 되고 때때로 불만은 다른 아닌 경찰에 관한 것인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교적 상황에서 경찰의 불친절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면, 경찰은 그들 자신이 직접 책임이 없는 행위 때문에 시민의 적대감의 대상이 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경찰은 통상적인 사교적 접촉을 꺼리고, 자신의 경찰동료들이 덜 이상하고 덜 위협적이며 훨씬 더 사람을 편하게 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교대근무제와 비정기적인 휴무도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그들이 봉사하는 대상인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 이로 인해 '포위되어 있다는 의식' (siege mentality), '우리-저들이라는 의식' (us-them mentality)이 생겨나고, '저들'은 '우리'에 대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협조를 제공하는지에 의해 다시 구별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저들 의식이 지배하게 되면, 충성(忠誠, loyalty)이라는 덕목이 중시되며, 이런 충성은 동료경찰관의 비리를 보호해주는 소위 '침묵의 규범' (code of silence), '침묵의 푸른 벽' (blue wall of silence)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11) 냉소주의

사회 그리고 조직에 대한 경찰의 경험에 도덕적 냉소주의 생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찰이 봉사하는 사회에 대한 실망과 사회는 우선이 지배하는 적대적인 세계라는 인식이 형성될 때 이러한 냉소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데, 경찰관의 냉소주의는 경찰제도와 사회일반 양자를 향하게 된다. 특히, 사회가 우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경찰조직이 하급직원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냉소주의는 쉽게 자리 잡는다. 이런 냉소주의는 경찰관의 동료에 대한 충성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화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을 위해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있는 동료경찰관에 대해, 나쁜 놈을 몇 대 쥐어박았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그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출세에만 전념하는 고위직에 협조해야 하는가?' 등의 인식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정직성에 대해 불신하고 도덕적 질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4. 한국 경찰의 고충

(1) 계급사회의 비애

경찰 속에 중에 "계급이 깡패"라는 표현이 있다. 계급이 높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상사가 업무뿐만 아니라 부하의 인격까지 지배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순경에서 경사에 이르는 소위 '비간부' 하위직 경찰관은 웬지 가벼워 보이는 일 모양(경위 이상 간부는 무궁화 꽃 모양)계급장을 달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방망이 차고 순찰을 돌아야 하며, 주민들도 계급이 낮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식에게 경찰관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경찰관도 있다. 반면에 경위 이상 경찰관은 '간부'로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지휘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에서도 그 만큼 존중해 준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일부 하위직 경찰관은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2) 승진 적체현상

경찰관 승진시험은 그 어렵다는 고시보다 어렵다고 한다. 전체 9만 경찰관 중 86.4%가 경사 이하 비간부인 기형적 인력구조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으로, 2000~2002년 전체 경찰 퇴직자의 74%가 경사로 퇴직한 것을 보아도 경위 이상 간부로 승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인력구조 개선안이 현실화되어 경위 이상 간부직이 대폭 늘어나 사정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2005년 까지 경장 6,000여 명이 경사로 근속 승진하게 되고 경사급 파출소장 306명이 경위로, 경위급 순찰지구대장 887명이 경감으로 상향조정되어 승진 폭이 확대되고 있다.

(3) 소외된 지방경찰

지방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승진 대상 인원, 포상, 국내외 연수, 첨단 장비 등 각종 혜택은 경찰청 및 서울 경찰에 집중되어 있다는 불만이 자주 제기된다. 특히,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이상 간부자리는 서울에서 승진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1~2년 근무하다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방경찰은 늘 중앙과 서울 경찰 뒷바라지만 한다는 소외감이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지방경찰 중에도 젊고 유능한 경찰관들 중에 많은 수가 언제나 경찰청과 서울로 갈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4) 도전하는 시민들

많은 경찰관들은 인권탄압 등 시민들에게 잘못 한 것은 과거 선배 경찰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그 화풀이는 아무 잘못 없는 현재의 경찰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 차량 운전자가 저항하고, 취객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체포된 범죄자가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무시당하고 오히려 물리적 부족으로 얻어맞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온갖 사회와 정치 문제에 대한 분노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5) 미흡한 교육 훈련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이 되면 6개월 동안 신임 순경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반해서,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 국에서는 대부분 2년 이상의 신임교육을 받는다. 특히 교육기간 중 법규와 이론 등 강의위주 주입식 교육에 치중하여 실제 경찰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기술과 경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 대처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익히지 못하고 현장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에 배치된 이후에도 과학화 전문화 된 분야별 실무 보수 교육이 부족하여, 경찰 실무 기법 부족에 따른 자신감 결여 상태에서 각종 실적과 신속한 사건해결 요구 등 상부의 무리한 지시와 요구가 가해지게 되면 무리한 법집행, 불법 수사, 과잉진압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02 경찰과 인권

1. 경찰 활동과 인권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면 경찰업무 그 자체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이 된다. 즉 범죄나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 주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순찰활동이나 미아를 보호하고 부모를 찾아주는 일 등이다. 그러나 경찰업무가 그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상황 하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흥분한 가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보면 가해자가 인권 침해한다고 소리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집회를 해산하거나 도로점거를 막으려다 보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사회질서를 해치고 개인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아동 성폭행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다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인정을 위해 피해자와의 대질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등 한 마디로 경찰업무의 상당부분은 법집행과 인권침해 사이의 매우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관은 그 어느 누구보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지식이 높아야 하며, 인권침해를 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2. 한국 경찰과 인권

우리 경찰은 과거 부정적 경찰의 인상을 지우고 민주적 경찰,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우선, 불법시위의 진압에 중심을 두던 정책에서 벗어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고, 친절, 인권침해방지, 공정한 수사, 육설·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의 금지,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 보장, 피의자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조사경찰서비스현장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청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인권교양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고, 수사 교육과정에 인권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인권단체와 협조하여 인권강사를 초빙하는 등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국민의 인권의식의 신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고소,

고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경찰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 고발이나 진정이 제기된 인권침해의 유형별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가장 많으며,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경찰관련 진정사건 침해유형별 현황(2001. 11. 26 ~ 2003. 12. 31)

구 분	접수년도별 소계			총계
	2001	2002	2003	
1. 과도한 불심검문		4	8	12
2. 불법 / 부당 도감청		3	1	4
3. 불법 / 부당 압수수색	1	13	9	23
4. 불법 / 부당 감시검열	6	15	7	28
5. 과잉진압		9	23	32
6. 피의자 권리 미고지	1	13	19	33
7. 가족등에 대한 미통지			2	2
8. 불법 / 부당 입의동행	5	15	10	30
9. 별건 체포 / 구속	1	7	2	10
10. 체포 요건 결여	3	22	31	56
11. 험정수사		6		6
12. 과도한 총기 / 장구사용	1	15	11	27
13. 접견 / 교통권제한		4	5	9
14. 폭행	12	132	155	299
15. 가혹행위	12	86	66	164
16. 인격권 침해	4	50	77	131
17. 의료권 방해 / 제한		9	8	17
18. 사회적약자 /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9	10	19
19. 과도한 신체검사		2		2
20. 불법 / 부당 감금	2	10	13	25
21. 강압 / 부당 증거확보	11	12	15	38
22. 수사마진	17	34	34	85
23. 편파수사	25	99	75	199
24. 수사오류	15	26	22	63
25. 공소권 남용	4	7	2	13
26. 내사 / 피의 사실 유포		7	4	11
27. 전과기록 미삭제	1	2	2	5
28. 알 권리 침해		2		2
29. 간접피해	1	1	3	5
30. 기타	12	91	88	191
총합계	134	705	702	1541

3.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찰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수사활동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 피의자의 권리 불고지

-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강제연행
-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피의자가 담당경찰관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죄질이 나빠 신문을 해도 소용이 없다며 신문신청권의 포기를 종용하고 신문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서류 작성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에게 실질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음

◆ 체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 연행된 경우
 - 도주를 준비한 흔적이 없이 새벽 6시 30분 경 집에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긴급체포
 - 오후 4시 30분 구청장실에서 집무 중 긴급체포
- 현행범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체포, 연행된 경우

◆ 영장 없는 압수 수색

-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없이 가택과 사무실 수색
- 영장 없이 아이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집안을 수색함으로써 공포심을 조성한 후 물건들을 가져 간 사례
-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드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압수수색 실시
- 노동자회 사무실에 철문을 드릴로 뚫고 사무실 벽을 뜯고 침입하여 컴퓨터와 상담자료, 책 등을 압수해 간 사례

◆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사

-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상해를 당하고 연행과정에서 목발 압수, 알몸수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장 등을 고발
 - 장애인에게 목발은 발과 같은데 목발을 빼앗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

- 강간 피해자인 농아자가 수사과정에서 수화통역사 없이 진술하다가 나중에 수화가 서툰 통역사를 통해 진술하여 통역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게 되어 기해자가 불기소로 풀려나게 되었다가 나중에 재수사를 받고 기소
- 외국인에 대한 수사시 통역의 미숙으로 수사에 차질
- 정신박약자로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해 자백

총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 도주하던 피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하여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
 - 성폭행피의자가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뒤따라가던 경찰관이 쓴 권총에 아랫배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숨짐
- 시위시 경찰이 쓴 최루탄에 맞아 부상
- 시위중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아 부상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에게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접견 거부
-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

고문

- 고문은 인간에 대한 파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후유증은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금지
 - 1, 2심 재판에서 살인혐의로 실형을 받고 대법원상고 중에 있던 진범이 잡힘으로써 피고인이 석방
 - 구속 당시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의 신분이었으나 애인을 실해한 혐의로 연행되어 3일동안 3시간만 잠을 잔 상태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다가 자백하였으나 대법원 재판중 진범이 잡힘
- 어린이 유괴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손목이 수갑에 눌려 생긴 멍자국, 왼쪽 무릎 안쪽에 바닥에 비벼져 생긴 상처가 아물어 나타난 흉터, 왼쪽 발 두번째 발가락 발톱 밑에 피멍 확인
-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범인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재판부의 신체검증에서도 고문 사실이 확인되어 무죄선고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 밤샘수사, 회유 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
 - 여름에 냉방이 되지 않는 조사실에서 새벽 1시까지 조사하고 다시 새벽에 일찍 불러 사실상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조사관들이 번갈아가며 밤샘조사를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사례
 - 하루종일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함
 - 말하지 않으면 배후인들도 구속시킨다고 협박
 - 자백하면 같이 구속되어 있는 처와 처제를 풀어주겠다고 회유
- 간경화로 인해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며 안정을 취하지 않은 채 수사를 강행할 경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강행, 구치소 이감 후에도 통원치료를 불허
- 만성디스크로 평소에도 제대로 서있거나 걷기도 힘들어하며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상태인 환자에 대하여 눕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강행,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여 병이 악화
- 진료팀과 변호사가 왕진 및 접견차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 불허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 가정교사인 피해자를 고등학생인 기해자가 자신의 침대방에서 강제로 강제하고 거실에서 목을 즐라 죽이고 옥상 입구 앞 공간에서 칼로 찌르고, 승강기를 이용해 김씨를 아파트 옆 공터에 버린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조서를 기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한국판 개인교수' 식의 선정적인 보도가 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불륜한 성행위가 빚어낸 단순살인사건으로 왜곡되도록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훼손
-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의 발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

불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 미흡

- 술집 주인과 다툼이 생겨 무허가 주점이라는 신고를 한 신고자를 폭행하고 파출소로 연행한 후 목격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장 찍기를 강요하고 부인이 경찰관을 남편이 폭행했다는 진술서를 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심리적 압박 가함
- 대학생과 조직폭력집단과 술집에서 다툼이 생겨 일방적으로 야구 배트 등 흉기로 구타를 당하여 상처를 입고 일행의 일부는 납치, 감금되어 폭행을 당함
 - 검거된 조직폭력집단의 간부가 파출소에서 "내가 징역을 가게되면 동생들을 시켜서 칼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조사받는 동안에도 협박을 당하였으나,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해자의 검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납치, 감금 사실을 누락하는 등 경찰의 사건 축소의혹
- 불필요한 대질심문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성시켜 합의를 유도

-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경찰에서는 아무런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과 얼굴 등을 노출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복의 우려
-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청 무시
-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사건을 처리한 후 재조사 해당 경찰관 징계
 - 목격자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아 일방적인 사건처리라는 의혹
 -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짐

(2) 경비활동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집회·시위에서의 경찰력의 불법적 사용

-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서장의 지휘로 해산에 나섰던 경찰들이 집회참가자들에게 해산 통보를 한 뒤 5분의 시간을 주고 방패와 곤봉을 이용하여 무력진압
 - 이 과정에서 50대의 노동자 다수가 방패로 온 몸을 찍히고 곤봉으로 구타
 - 시민 1인과 여성 참가자 2인이 전투경찰들에 의해 성추행
 -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도 집회현장을 구경하다가 전경들에 의해 참가자들과 함께 연행
- 경찰에 신고된 합법적인 철거반대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곤봉과 방패를 사용한 진압 뿐만 아니라 발길질과 주먹질, 모래와 물까지 동원하여 진압
 - 이 과정에서 부상자 다수 발생
 - 얼굴을 구타당해 치아 2개가 완전히 뽑혀 나가는 부상
 -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져 병원에 긴급 후송
- 조사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자 강제로 수갑을 채워 5~6명의 전경을 시켜 시지를 불들고 몸을 공중으로 띄워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조회 실시
- 조사 만료시간이 되자 연행자들을 강제로 끌고나와 강제, 강압수사 진행
- 전원에게 미란다 원칙 미고지

불법 감청 등 사생활 침해

- 합법적인 전화간청의 증가와 함께 불법 감청과 카메라 설치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 증가
 - 학생시위와 관련하여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
 -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도청사실을 밝설
 - 불법적인 감청은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에서 많이 발생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 대학에 들어가려는 학생에게 전경이 앞을 막고 학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변의 전경들이 합세하여 강제로 데리고 가서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열어 본 경우
-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해서 검문 자체를 거부한 학생들과 불심검문 거부운동을 벌인 학생들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의동행 유효시간인 6시간 내에 석방됨
- 99년 8월 서울대에서 치러진 범민족대회 관련해서 강제연행되었던 시민과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
 - 이들 중 다수는 등산객들이었으며 임산부도 있었음
-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에 연행한 다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에 유치시키는 이른바 임의동행의 관행이 보편적으로 이용
 - 피의자의 동의란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납치하듯이 연행하였으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를 가장하는 경우 발생

(3) 구금과 관련된 인권침해

불법적인 장구의 사용

- 일부 지역에서 족쇄를 사용하여 피의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장구사용이 문제
 -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 뿐 아니라 단순과실범과 도주우려가 없는 군의원 등 초범들에게 족쇄와 자물쇠가 달린 쇠사슬까지 사용
 - 기초의원에 출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면회시 족쇄를 채워 심한 모멸감
 - 접촉사고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다른 피의자를 경찰로 호송하면서 발목에 족쇄를 채워 인권을 침해

경찰서 유치장 운영상의 인권침해

- 경찰서내 유치장의 시설도 문제가 됨. 유치장의 침구 등을 세탁하지 않아 비위생적이라는 진정 제기
- 유치장의 화장실 사용이 인권 침해

피의자 알몸 수색

- 선거법 위반행위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연행한 여성들에 대하여 자해용 도구를 찾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알몸수색 실시
- 경미한 사건으로 흉기를 소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색
- 여성 노동자 3명이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간부에게 전달하려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간단한 몸수색을 마친 뒤 유치장에 수감된 후 같은 날 변호사와의 면회를 마친 이들에게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수색 실시
- 이 과정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라고 지시한 후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몸상태에서 않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몸수색 실시

4. 경찰업무 관련 인권 딜레마 상황과『경찰관 10대 인권지침』

많은 경우 경찰업무상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명백한 악의적 행위 보다는 업무의 집행목적 달성을 과정에서 유발되는 갈등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친인권적인 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의식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원칙'의 존재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오랜 기간 여러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고민하고 경찰업무현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한 「10대 인권지침」은 이러한 경찰 인권 딜레마 상황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 준다. 대부분의 경우 이 「10대 인권지침」은 우리 현행법과 일치하여 큰 무리 없이 경찰관들에게 받아들여지리라 생각되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사용을 하지 말도록 규정한 인권지침 5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자가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 총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우리 현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과 일치하지 않아 일부 경찰관의 이의제기가 예상되나 이 경우에도 우리 법의 총기사용의 한계는 경찰비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인권지침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우리 법의 총기사용 요건과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의 인권지침 소개는 관련된 사례를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권지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인권 길라잡이 - 경찰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중소기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사례

- 어느 중소기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경찰서에 데려와 자기공장에 무단침입하려는 외국인을 잡아왔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불법체류자)로 고발하였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는 해당 회사에서 1년간 일한 임금을 전혀 못 받고 갖은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가 임금을 달라고 하니 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 중소기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들 말은 믿을 게 못되며 자신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 온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면서 자꾸 말썽만 일으키는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국가경제와 국민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관리소로 속히 인계, 강제출국조치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담당 경찰관은 경찰은 국민의 공복이지 외국인의 보호자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동족애와 경찰은 공정한 법집행자이며, 보편적 인권의 수호자여야 한다는 경찰직업의식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
- 위와 같은 사례에서 경찰관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경찰관의 가족, 친지)도 외국에서 외국 경찰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억울한 처분을 당한다(멕시코, 미국, 중국, 일본에서의 사례 등)는 것이다.
- 경찰활동의 국제적 규범인 세계인권선언문과 유엔(UN)의 경찰행동강령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경찰 10대 인권지침에서 이러한 갈등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인권지침 1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폭력과 협박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경찰관은 어린이, 노인, 여성, 피난민, 기출인 및 사회적 소수 등 폭력과 협박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2) 오만불손한 성폭행 피해자 Z양

- 20대 무직인 Z양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중년의 기업체 간부 A씨를 고소했는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증거를 채취하고 진단서를 받아오는 등 당돌한데다 경찰관의 질문에도 도전적이고 반항적으로 응대하며 혹시 저놈 편드는 게 아니냐며 히스테리 반응을 보여 담당 경찰관은 이 여자가 진짜 피해자 맞나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 Z양은 술에 취해 새벽2시에 혼자 길에 앉아 있었고, 가해자 A씨가 이를 발견, 부축하여 도움을 제의하다가 함께 여관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A씨는 자기가 좋아서 성행위에 합의해 놓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 저런다, 돈을 노리는 것 같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 조신하지 못한 행실이나 경찰에서의 오만한 태도 등 Z양을 동정하고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담당 형사는 갈등을 느끼게 되었고,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한 후 검사, 판사의 결정에 맡기더라도 자초지종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출입기자에게 이야기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Z양이 사회적 심판과 비난을 받게 하고픈 마음이 들었다.

· 인권지침과 같이 범죄의 피해자는 그 성격과 행실, 외모나 태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존중 받아야 하며 경찰관의 사적인 감정과 판단은 사적인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야지 이를 결코 업무에 연결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지침 2

경찰관은 모든 범죄 피해자를 연민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특별히 그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3) 치안센터(옛 파출소)에서의 취객 난동

· 4명의 취객이 서로 싸우다 치안센터에 찾아와 시비를 가리려 하던 중 다시 서로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던 50대 초반의 경사 민원담당관이 4명의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집기들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순찰지구대에 긴급히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6명의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소리를 질러대며 저항하고 난동을 부렸고, 민원 담당관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부서진 집기 사이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다.

감히 경찰관서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었으니 흠씬 두들겨 주어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김순경, 박경장의 강한 주장과 화가 나고 어이없지만 죄책은 나중에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고 지금은 수적 우세를 이용한 위압으로 취객들을 제압 진정시키고 가급적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순경의 생각 사이에 순간적인 갈등이 발생하였다.

인권지침 3

경찰관은 오직 법이 허용하는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른 필요최소한 정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불법 시위 상황

· 외국 대사관 앞에서 외국 국기를 불태우는 불법집회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 이를 해산하려하자 시위대는 미리 준비한 오물을 경찰관들에게 끼얹고 과격하게 저항하여 사회혼란과 외교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때 경찰봉과 방패 등 장비들을 최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경찰활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록 불법적이고 다소 폭력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준법을 촉구하며 자진해산을 유도해야 하는가.

인권지침 4

경찰은 불법적이지만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통제할 때에는 기급적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할 때에도 오직 필요최소한의 물리력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검문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차량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통행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하는 중에 승용차 한 대가 경찰관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과연총을 쏘아 겨겨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원을 요청하고 수배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인권지침 5

경찰관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 등 실상용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검문검색을 피해 달아나는 시위가담 의심자

반미와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불법폭력집회가 예상되자 경찰에서는 기동대로 하여금 경계근무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중 옷차림과 행색 등으로 보아 시위가담자임이 분명하고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시위용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왜 길을 막느냐며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가.

인권지침 6

경찰관은 법적인 근거 없이 어느 누구도 체포해서는 안 되며, 체포 할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7) 가족 면회를 요청하는 긴급체포 피의자

- 전과 3범인 강도강간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와서 유력한 증거물인 피해자 소유 물품의 소재를 추궁하려는데 가족에게 전화를 꼭 해야 한다며 전화연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긴급체포 기한인 48시간 안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가 급한데 피의자가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겠다니 이를 허용하고 싶지 않으나 하도 인권을 강조하는 세상이라 조사가 다 끝나면 가족과 전화는 물론 면회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좋은 말로 타이르고 그대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인권지침 7

경찰은 체포 즉시 체포된 사람이 가족 및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8) 유괴사건의 용의자

- 6살 짜리 여자 어린이가 유괴된 후 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수 차례 걸려왔고 이를 추적하던 경찰은 사건발생 이를 만에 공중전화 부스에서 협박전화를 걸던 용의자를 체포하였다. 그러나 용의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유괴된 어린이의 소재를 밝히지 않아 어린이의 생사와 안전을 염려하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보다 못해 형사과장과 만나 결코 취재하지 않고 모른 척 할 테니 피의자에게 적절한 가혹행위를 가해서라도 빨리 어린이의 위치를 알아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지침 8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경찰관은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고문 혹은 가혹행위를 행하거나 조장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지시 명령도 거부하여야 한다.

(9) 국가적 위기상황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좌의 반정부단체의 핵심 운동원을 검거하였는데 조직 상층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치며 국가이익에 반하는 기밀사항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모 권력기관 담당자로부터 해당 좌익사범 검거 사실 관련기록을 모두 파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야간에 인근 강변에서 신병을 넘겨 달라는 연락이 왔다. 지금은 결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과거 불행한 시기에 발생했던 사례이다.

인권지침 9

경찰관은 결코 탈법적 처형을 행하거나 사람을 행방불명 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시하거나 은폐해서도 안 된다.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지시 명령도 거부하여야 한다.

(10) 동료의 인권침해 행위

인권지침은 자신의 행동만이 아닌 경찰 내 다른 조직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인권지침 10

경찰관은 위의 기본인권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반드시 상급자나 검찰, 혹은 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부

인권보호 프로그램

경찰관의 역할, 경찰 내부의 관행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업무상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경찰 업무 영역을 고려하여 6개의 경찰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의 성패는 전적으로 진행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가 가는 만큼 교육이 간다”는 말과, “Messenger is Message”라는 표현은 교육진행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참석자들에게 다가가서 마음과 귀를 열고 그들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소리를 들어주길 당부 드린다. 그리고 “교육은 시작중이 울리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선배들의 충고와, 교육에 대한 준비의 정도에 따라 목표가 성취되는 수준도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한다면 반드시 재미와 내용습득이 함께 이루어지는 훌륭한 인권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

01 경찰은 거리의 심판자인가 •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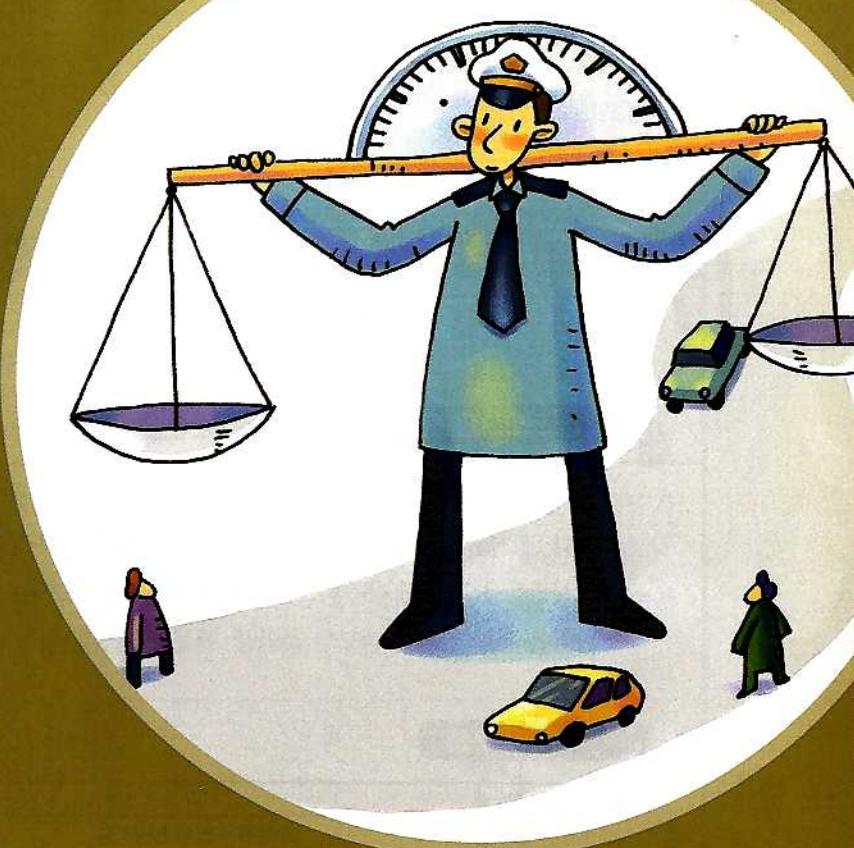
02 유능한 경찰은 누구인가 • 66

03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 73

04 순찰지구대에서 • 81

05 수사에서의 피의자 인권 • 90

06 청소년 이해하기 • 102



01 경찰관은 거리의 심판자인가?

프로그램 개요

경찰관들은 자신의 역할이 '거리의 심판자'라고 생각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중 적지 않은 경우가 바로 경찰관의 역할은 나쁜 사람들을 찾아서 응징하고, 벌하는 심판관이다! 이는 경찰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과도한 정의감' 때문에 발생한다.

교육 구성

단계	주요 프로그램	소요시간
도입	OHP를 이용한 문장퍼즐	약 5분
	번호게임: 흥길동을 번호하라!	약 30분
전개	휴식	약 10분
	강의: 경찰관의 역할	약 15분
정리	토론	약 30분
		총 90 분

교육 목적

- '경찰관은 거리의 심판자'라는 왜곡된 역할모델을 분석한다.
- 경찰관은 수사, 즉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재판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임을 확인한다.
- 유·무죄를 판결하거나 형벌을 집행하는 역할이 경찰관의 역할은 아니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발생 가능한 사례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난 16세의 부유층 자제 '김질난' 군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와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청소년에게는 술을 팔 수 없다는 50대 주인에게 기분 나쁘다며 마구 폭력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기물을 피손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피의자 '김질난' 군이 조사관인 '이현실' 형사에게 계속 영어와 반말을 섞어 쓰며 "치료비 주고 보상금 줘서 합의하면 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고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느냐", "아버지 친구가 고위직 검사다"라고 대들며 책상 위의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하려 하기에 전화기를 뺏으려 하자 "X발, 이거 놈"라고 소리지르며 거칠게 항거하였다. 평소 의협심이 많던 '이현실' 형사가 격분하여 '김질난' 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어른한 테 예의를 갖춰라"며 훈계를 하였다.



교육 내용

도입 (총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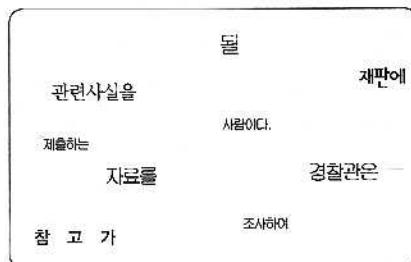
OHP를 이용한 문장퍼즐 (약 5분 소요)

목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참석자들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재미있다.
자연스럽게 참석자들의 관심을 교육주제로 끌어들인다.

진행 순서 및 방법

1. 강사는 미리 준비한 OHP를 참여자들에게 배눠준다(만약 OHP가 없을 경우에는 전지나 소포지에 내용을 적은 뒤 제시하면 된다). OHP 필름에는 강의주제나 목적 혹은 화두가 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문장이 단어나 글자단위로 분리되어 마구 뒤섞여 있다.



〈문장퍼즐의 예〉

2. 처음에는 5~10초 정도를 보여주고 내용을 가린다. 그리고는 안의 내용을 보았는지, 무슨 문장이었는지 등을 물어본다. 참석자들은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보여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3.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내용을 다시 보여준다. 약 5~8초 동안 보여준 뒤 내용을 다시 가린다. 그리고는 다시 물어본다.
4.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참석자들은 5분 안에 이번 교육의 주제가 되는 문장을 저절로 외우게 된다.
5. 가장 신속하게 문장을 조합해 내는 참여자 조가 승리하는 게 임이다.
6. 할 수만 있다면 5분 동안 서너 번의 문장퍼즐도 가능하다.

준비물

OHP, OHP필름

교육내용

전개 (총 55분) **변호게임 : 홍길동을 변호하라!** (약 30분 소요)

목표

조별작업을 통해 참석자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한다.
참석자들의 입과 마음을 열어준다.
'심판자'라는 왜곡된 역할모델을 분석한다.
'거리의 심판자' 모델에 대해 참석자들이 스스로를 분석한다.

진행순서 및 방법

1. 조 편성 및 변론 만들기 단계

- 먼저 열 명 단위로 조를 편성한다.
- 진행자 교수자료에 첨부된 홍길동전의 내용과 진행순서를 나주어 준다.
- 그런 다음 각 조는 나누어 준 홍길동전의 내용을 읽고,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를 나눈다.
- 이야기를 나누면서, 홍길동과 활빈당은 무죄라는 논지로, 때로는 재미있기, 때로는 비꼬듯 혹은 애걸조로 변호사의 변론을 만든다.
- 각 조별로 다 만들어진 변론을 발표한 뒤, 변론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사실에 대해 전체토론을 진행한다.

2. 발표하기 단계

- 대표로 3~5 조를 선택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 만약 모든 조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고 싶을 때에는 전지와 같은 큰 종이에 글로 적어서 동시에 붙여놓고 읽게 하면 된다.

준비물

교수자료(홍길동전의 내용), 교수자료(진행순서), 전지, 매직펜

OL... 진행자용 교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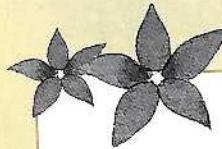
홍길동전의 내용

주인공 홍길동은 세종조 서울에 사는 홍 정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천비 춘섬의 소생이다. 길동은 유시(幼時)부터 병서와 도술에 관한 책을 정독 끝에 도술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훌륭한 인물이 되어 출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천비 소생이라 가족들의 구박과 학대를 무수히 받았으며, 호부 호형(呼父呼兄)조차 못하였다. 그는 달밤에 뜰에 나와 무술을 연습하다가 부친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한다. 가족들은 길동의 비범한 위인이 장래의 회근이 될까 근심하고, 길동을 없애 버리려고 모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친으로부터 듣고 피신하라는 충고를 받아 슬픔을 금하지 못하며 훌연히 방랑의 길을 떠난다. 그는 정처 없이 가다가 적굴에 들어가서 힘을 시험하고 도적의 괴수가 된다.

먼저 해인사의 재물을 탈취하려 할새, 길동이 먼저 가서 중들과 음식을 같이 먹다가 일부러 돌을 입에 넣고 깨문다. 돌 깨무는 소리를 듣고 중들이 놀라 사죄하매, 길동이 거짓 대노하여 질책하기를, “너희들이 어찌 음식을 이다지 부정히 하였는가. 이는 반드시 나를 능멸함이라.” 하고, 종자에게 명하여 중을 다 결박하여 놓고는 모든 재물을 탈취한다. 이후로 길동이 활빈당이라 자칭하고 지혜와 도술로 써 팔도 지방 수령들의 불의의 재물을 탈취해 가지고 도망하면서, “아무 날 전곡(錢穀)을 도적한 자는 활빈당 행수 홍길동이라”는 방을 붙여둔다. 합경 감사가 도적을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고, 조정에 장계(狀啓)를 올려 포청으로 홍길동이란 대적을 잡으라 한다. 잇달아 각도에서 장계가 올라오는데, 한결 같이 도적의 이름이 홍길동이요, 도적을 당한 일자가 한낱 한시다.

우포장 이용이 자원하여 도적을 잡으러 나선다. 각각 포졸들을 분산시켰다가 문경으로 집합할 것을 약속하고, 그는 포졸 수명을 데리고 변복하고 다니다가, 하루는 날이 저물어 쉬고 있었다.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와서 뵈거늘, 이용은 그 소년을 따라 첩첩 산곡으로 들어간다. 그 소년이 이용에게 밀하기를, “이 곳이 길동의 적굴이라 내 먼저 들어가 탐지(探知)할 것이니, 그대는 여기 있어 기다리라.” 하고 적굴로 들어간다. 잠시 후 수십 명의 적졸(賊卒)들이 와서 이용을 잡아 적굴로 들어간다. 길동이 이용을 보고 꾸짖어 밀하기를, “나는 곧 활빈당 행수 홍길동이라. 그대 나를 잡으려 하매, 그 용력(勇力)과

01



뜻을 악고자 하여 어제 내 청포(青袍) 소년으로 인도하여 이 곳에 와 나의 위엄을 보게 함이라.” 하고 술을 권하며, “나를 잡으려 생각지도 말고, 나가서 말도 내지 말라.” 하고는 내보내 준다.

국왕이 길동의 체포명령을 전국에 내렸던 바, 전국에서 잡혀 온 길동이 백여 명이나 되었으나, 호풍 환우(呼風喚雨)하고 둔갑장신(遁甲藏身)하는 초인간적인 도술을 부리는 길동이 잡힐 리 없었다. 조정에서는 하는 수 없이 길동의 소원을 들어 병조판서를 제수(除授)하여 회유하기로 한다. 길동은 천은을 감수하고 병조판서가 된다. 그러나, 길동은 병조판서도 시원치 않아서 남경으로 향하여 가다가, 산수 가 수려한 율도국을 발견한다. 그는 돌아와서 조정에 신청하여 정조(正祖) 1천 석을 얻어 가지고 3천 도 당을 거느리고 가서 율도국을 점령하고 왕이 된다. 마침 부친이 졸하였다는 부음을 듣고 고국으로 와서 부친의 삼년상을 마치고, 다시 율도국으로 들어가서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출처: 네이버 오픈사전

02... 진행자용 교수자료

02



진행순서

1. 10명을 한 조로 편성해주세요.
2. 각 조는 나누어 드린 홍길동과 활빈당의 일화를 읽고, 지난 기억을 되살려 홍길동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3. 각 조에게 주어진 임무는 홍길동과 활빈당이 무죄라는 사실을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비꼬듯 혹은 애걸조로 만들어 변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4.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모든 조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브레인라이팅을 이용해야 합니다.
5. 각 조별로 다 만들어진 변론을 발표한 뒤, 변론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사실에 대해 전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변론만들기”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총12분입니다.

교육내용

전개 (총 55분)

강의 (약 15분 소요)

목표

짧은 시간에 교육을 위한 문제제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문제제기 이후에 강사의 논지와 입장을 밝히고, 경찰관의 올바른 역할모델을 제시한다.

진행 순 서 및 방 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론/일반적 테마로 시작: 거리의 심판자 모델을 짧게 언급한다. 2. 어떤 특별한 견해 제시: 강사가 정말로 원하는 경찰관의 역할모델을 소개한다. 3. 앞서 제시한 역할모델의 근거1 제시 4. 앞서 제시한 역할모델의 근거2 제시 5. 요구: 앞서 제시한 역할모델과 같은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이제부터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지, 무엇을 조심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강의 순서도〉</p>
준 비 물	없음

교육내용

전개 (총 55분)

토론 (약 30분 소요)

목표

토론을 통해 경찰의 역할모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변론해 봄으로써 참가자는 스스로 자신의 고정관념을 객관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거리의 심판자 모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진행 순 서 및 방 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 편성 단계: 3인 1조로 조를 편성한다. 중간에 앉은 사람은 '재판관' 역할을, 오른편 사람은 인권침해 고소를 당한 '경찰관의 변호사', 왼편 사람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의 변호사' 역할을 맡는다. <p style="text-align: center;">〈좌석배치의 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변론 단계 (약 10분 소요): 양 편의 사람은 주어진 시간 내에 열심히 각자의 논거를 펼쳐 판사를 설득하여야 한다. 3. 평결 단계 (약 5분 소요): 10분이 지나고 나면 각 조의 판사는 어느 편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합당한지를 근거로 평결을 내린다. 4. 자유토론 (약 10분 소요): 참석자들이 자유로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다. 손을 들어 표시한 사람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며, 내용은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다. 단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발언권을 쥐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5. 마무리 단계 (약 5분 소요): 강사는 교육 중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지막 당부를 결들인다.
준 비 물	없음

02 유능한 경찰은 누구인가

프로그램 개요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쏟아지는 각종 지시와 명령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찰업무 환경의 특성상 ‘유능한 경찰’ 이런 과정보다는 결과, 원칙보다는 요령, 인권보다는 실적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쉽다. 유능한 경찰은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경찰로, 그가 바로 자연스럽게 인권수호자가 되고, 유능한 경찰이 된다.

교육 구성

단계	주요 프로그램	소요시간
도입	파트너 소개 게임: 국보를 찾아서	약 20분
	사진전 1단계	약 20분
전개	휴식	약 10분
	사진전 2단계	약 25분
정리	강의	약 15분
총 90분		

교육 목적

- 왜곡된 유능한 경찰상에 대해 생각해본다.
-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찰의 본래 역할임을 알게 한다.
- 겉으로 좋은 실적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유능한 경찰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격려, 그리고 진정한 문제해결을 이끌어 내는 사람이 유능한 경찰이라는 신념을 강화시킨다.

발생 가능한 사례

경찰경력 2년 차인 이 순경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순찰기구대 근무에 나름대로 익숙해지면서 관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을 위한 경찰서비스와 탈선 청소년 선도 등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주위에선 언제 승진하느냐, 경찰서 정보과나 지방경찰청 같은 좋은 데로 옮겨야 하지 않느냐고, 일만 열심히 하면 누가 알아주느냐고 총고 결책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령껏 스티커도 많이 떼서 실적도 올리고 위에서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 질해서 현명하게 상황대처도 잘 하고, 룰루이 시간 내서 승진시험 공부도 하라고 난리들이다. 일전에 지방청 간부 한 사람이 좀 뵐달라는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해서 형사계에 넘겼더니 지구대장님 심기가 많이 불편해진 것도 마음에 걸린다. 과연 어떻게 해야 유능하고 출중한 경찰관이 되는 것일까.

교육 내용

도입 (총 20분)

파트너 소개 게임 – 국보를 찾아서 (약 20분 소요)

목표

마음열기를 위한 게임이다.

짧은 시간 내에 파트너에게 자신의 장단점과 신상이력을 밝히고, 또 상대를 인터뷰하는

과정을 통해 말하고 듣기가 자연스레 출현된다.

인간, 특히 동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진행 순서 및 방법

1. 10명이 한 조가 되도록 조를 편성한다.
2. 각 조를 다시 2인 1조로 나눈다.
3. 이렇게 나누어진 두 사람은 6분 동안 서로를 인터뷰한다. (한 명에게 주어진 인터뷰시간은 3분이다.) 이 때 상대방에게서 알아내야 할 내용은,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장·단점 두 가지이다. (이 내용을 미리 큰 종이에 기록하여 앞의 칠판에 붙이면 빠르고 정확한 진행을 할 수 있다.)
4. 파트너 인터뷰가 끝나면 10명이 함께 모여 모두에게 자기 파트너를 소개한다. 이때 마치 자신의 파트너가 국보인 양, 만들어진 연도, 생산지, 국보의 특성(장·단점 2가지) 등을 소개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국보를 찾아서”라 부른다.)

준비물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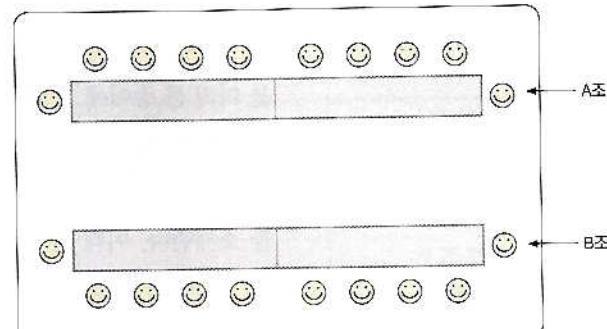
교육내용

전개 (총 55분) 사진전 1단계 및 휴식 (약 30분 소요)

목표
조별작업을 통해 사고의 상승작용이 가능하게 한다.
'유능한 경찰'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풀어놓는다.

진행순서 및 방법

- 조 편성 단계: 앞 단계에서 구성된 10명 단위의 조 2개를 다시 한 조로 묶는다.
- 좌석배치: 10명씩 서로 마주보고 앉도록 좌석을 배치한다.



〈좌석배치의 예〉

- 인사: A조와 B조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 게임의 제목 및 목적소개: '도시경찰과 시골경찰'이라는 제목을 소개한다. 그리고 '유능한 경찰'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교육 방법이 선택되었음을 설명한다.
- 진행순서 소개: 진행자는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잡지와 진행자용 교수자료에 첨부된 진행순서를 각 조에게 2장씩 나누어 준다.
- 진행단계: 각 조는 진행순서에 적혀있는 지시에 따라 조별 인터뷰를 진행한다.
- 휴식: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휴식시간을 갖는다.

준비물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잡지(조의 수 만큼),
진행자용 교수자료(진행순서)

OI... 진행자용 교수자료

‘도시경찰과 시골경찰’ 진행순서

- 먼저 A조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잡지에서 사진 혹은 그림 한 장을 뽑아 도시경찰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의 예 “내가 생각하는 유능한 도시경찰은 이 냉장고와 같다. 왜냐하면……”
- A조원들이 발표할 때 B조원 모두는 발표자의 말 속에 들어있는 유능한 도시경찰의 특성을 모두 적는다. 이 때 가능하면 문장이 아닌 단어로 적는다.
- A조원들의 발표가 끝나면 B조들은 유능한 도시경찰의 특성이 적힌 종이를 A조에게 건네준다.
- 다음은 B조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잡지에서 사진 혹은 그림 한 장을 뽑아 시골경찰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의 예 “내가 생각하는 유능한 시골경찰은 이 사워하는 여인과 같다. 왜냐하면……”
- B조원들이 발표할 때 A조원 모두는 발표자의 말 속에 들어있는 유능한 시골경찰의 특성을 모두 적는다. 이 때 가능하면 문장이 아닌 단어로 적는다.
- B조원들의 발표가 끝나면 A조들은 유능한 시골경찰의 특성이 적힌 종이를 B조에게 건네준다.
- 게임 끝! 10분간 휴식!

교육내용

전개 (총 55분) 사진전 2단계 (약 25분 소요)

목표
발상의 전환을 돋기 위해 그림을 사용한다.
앞에서 나온 개념들 중에서 '유능한 시골과 도시경찰'의 상을 구체화할 수 있다.

진|행|순|서|및|방|법

1. **진행방법의 소개:** 진행자는 사진전 2단계의 진행순서를 소개한다.
2. **OHP필름 지금단계:** 각 조에게 1장의 OHP필름과 몇 가지 색상의 네임펜을 지급한다. OHP필름은 진행자용 교수자료로 첨부된 그림을 복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기록단계:** 각 조는 앞 단계에서 모아진 유능한 도시경찰의 특성 혹은 시골경찰의 특성을 함께 분류한 후, 각 조에게 주어진 한 장의 OHP 필름에 기록한다.
4. **발표단계:** 각 조별로 OHP필름을 사용하여 유능한 도시경찰상 혹은 시골경찰상을 발표한다.

변이형

- OHP 필름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지2장을 붙여서 조원 1명을 그 위에 눌하고, 그 사람의 외곽선을 따라 그린 뒤 내용을 채워 넣을 수도 있다.
- 그런 여건도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잡지에서 전신이 나온 그림을 골라 전지에 붙인 뒤 내용을 채워 넣도록 해도 된다.

준|비|물

진행자용 교수자료(OHP 복사용 전신사진)로 OHP 필름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색상의 네임 펜

○I... 진행자용 교수자료

OI

OHP 복사용 전신사진

※ 각 부위별로 화살표로 지적하면서 내용을 넣어주세요.

 교육내용 정리 (총 15분) 강 의 (약 15분 소요)

목표

총정리 및 마무리 당부를 위해 사용한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교육목적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진행 순서 및 방법

1. 강사는 지금까지 약 80분 동안 만들고 발표한 도시 경찰과 시골 경찰의 특성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여 인권수호자로서의 경찰상을 제시한다.
2. 그리고 경찰이 근무지가 어디이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인권수호자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3. 마지막으로 인권수호자야 말로 진정한 유능한 경찰이라는 결론을 맺는다.

준비물 없음

03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프로그램 개요

엄격한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계급사회의 특성상 경찰관들은 계급이 낮은 부하직원을 무시하고 깔보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무시당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은 조직사회의 특성상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 하지만 불만과 자괴감이 마음속에 쌓이게 되고 이러한 불쾌감은 범죄자나 단속대상, 혹은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이나 강압행위 등으로 이어져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 구성

단계	주요 프로그램	소요시간
도입	그림퍼즐	약 15분
전개	연필게임	약 40분
	휴식	약 10분
정리	강 의: 경찰의 내부문화 자유발언	약 15분 약 10분 총 90분



교육 목적

- 경찰의 자기성찰능력을 높이고, 경찰 내부의 관계가 가지는 문제성을 부각시킨다.
- 마치 주종관계를 연상시키는 상하관계, 아랫사람을 자신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리더십, 함부로 내뱉는 인격모독적 언어, 사적인 약점 들키내기, 심지어는 가족이나 개인적 사안까지도 보호 받지 못하는 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발생 가능한 사례

과장님은 우리에게 “경찰은 한 가족이야. 과장은 아버지, 계장은 어머니, 반장은 큰 형. 늘 가족처럼 윗사람 잘 받들고 아랫사람 잘 보살펴야 해”라고 이야기 하시곤 한다. 실제로도 직원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아버지처럼 호되게 꾸중하곤 나중에 소주 한잔 사 주며 풀어주신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는 호칭 역시 “야, 호식아”, “어이 김군아!” 등이고 때로는 “막둥아!” 같은 별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과장님 등 윗사람의 은행일이나 담배 심부름 등을 주로 여직원인 김양이나 의경인 이군 뜻이지만 급할 때나 중요한 심부름은 직원들이 한다. 남자들의 세계이다 보니 시간 날 맨 음담패설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여직원들은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거나 때론 맞장구 치며 함께 즐긴다. 회식할 때에도 위계질서와 서열은 퀄같이 지켜야 하며 노래방에서도 계급 순서대로 노래를 부른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런 조직문화가 물에 배어 불편함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도 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 계급이 낮다고 반말 듣고 마음취급 당하는 내 모습이 자꾸 부끄러워진다.

교육내용

도입 (총 15분) 그림퍼즐 (약 5분 소요)

목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토론과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을 만들 수 있다.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의 입이 열린다.
게임을 하면서도 참석자들의 관심을 교육주제로 향하게 한다.
특히 다음 단계인 연필게임을 준비하는 장치이다.

진행 순서 및 방법

1. 소개단계:

- 강사는 자신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참석자들을 3이나 4, 혹은 6이나 8 개의 조로 나눈다. 이렇게 조를 편성하는 것은 다음 단계인 연필게임을 미리 대비하는 장치 이기도 하다. (다음부터는 이 조를 '큰 조'라고 부른다.)
- 그리고 각 조의 내부에서 또 다시 2인 1조의 조를 편성한다. (다음부터는 이 조를 '작은 조'라 부른다.)
- 작은 조에게 그림퍼즐이 들어있는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준다. (그림은 진행자용 교수자료로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는 게임의 진행방식을 설명한다.

게임의 진행방식

1. 받은 그림은 순서가 뒤섞여 있다. 파트너와 함께 그림의 올바른 순서를 맞추어라.
2. 순서가 정해진 그림의 제목을 결정하고, 기록하라.
3.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며, 10분 후에는 각 조별로 선택된 순서와 제목을 발표하고, 상호 비교할 시간을 갖는다.

〈게임의 진행방식〉

2. 진행단계: 강사는 시작을 알리고, 진행을 돋는 음악을 틀어준다. 이 경우에는 경쾌하고 빠른 음악이 어울린다.

3. 발표단계: 10분이 지나고 나면 발표시간을 갖는다. 진행이 재미있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념한다. 비판이나 지적은 가능하면 삼가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그리고 혹시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행자 자신의 답만 정답이라고 고집해서도 안되겠다.

준비물

진행자용 교수자료로 첨부된 그림

OL... 진행자용 교수자료

그림퍼즐

진짜순서

제 목

진짜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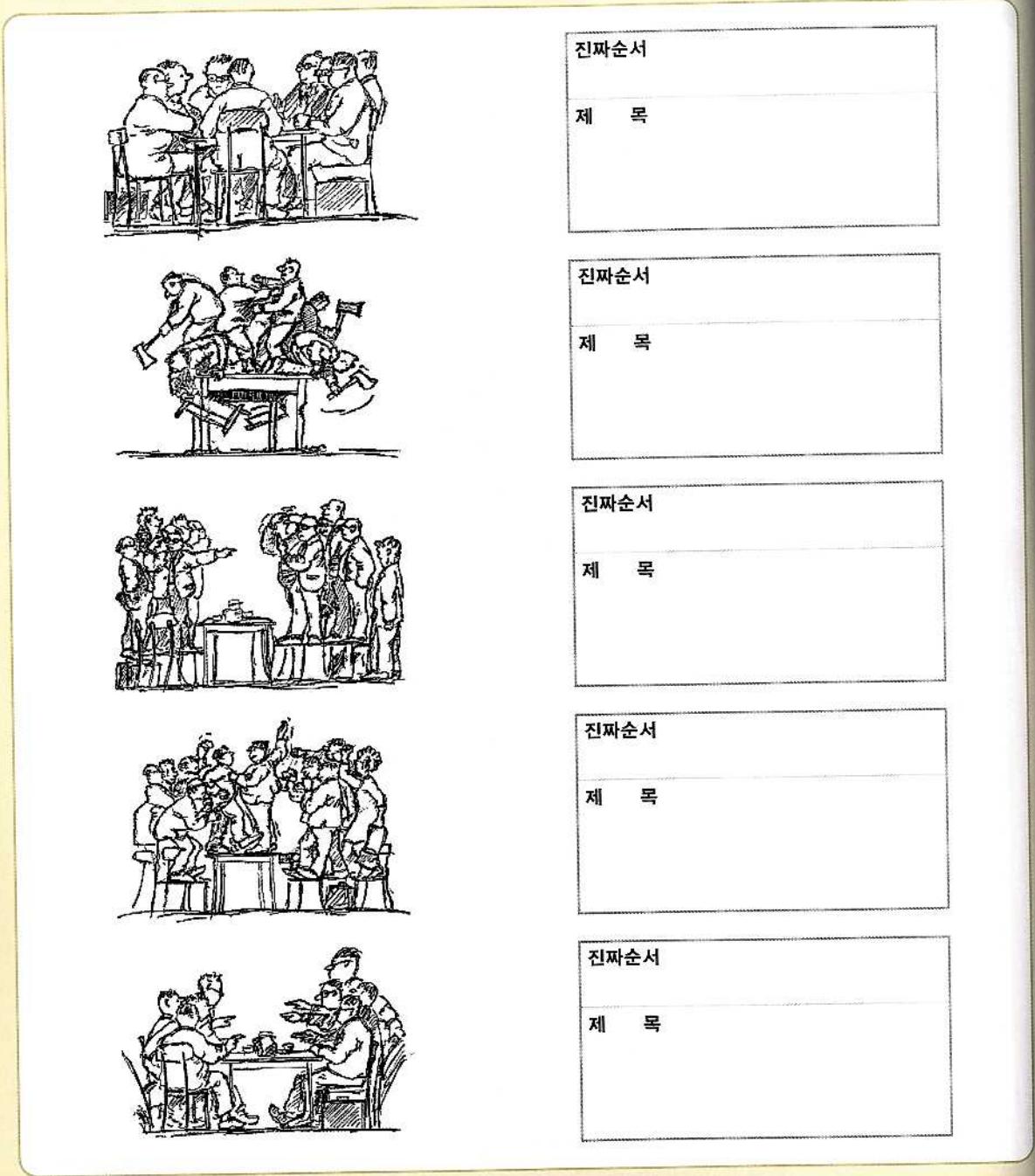
제 목

진짜순서

제 목

진짜순서

제 목



교육내용

전개 (총 50분)

연필게임 (약 40분 소요)

목표

인간간의 상호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게임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로이 느끼게 한다.

진행 순서 및 방법

1. 좌석배치 단계 :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좌석을 배치한다.

A팀	1조 연필 4조 관찰 3조 종이	B팀	1조 종이 4조 관찰 3조 연필
-----------	----------------------------------	-----------	----------------------------------

〈8개조로 편성된 좌석배치의 예〉

- 인원수가 30~40명일 경우에는 3조나 4조로 편성한다. 4조로 편성된 경우 3개조는 게임을 진행하고, 남는 한 조는 관찰자가 된다.
- 만약 인원수가 60~100명 정도일 경우에는 6개조나 8개조를 편성한다. 6개 조가 편성된 경우에는 '관찰자' 없이 모든 조가 게임을 진행하고, 만약 8개 조가 편성되었으면, 2개조는 '관찰자'가 된다.

2. 게임의 준비물 지급 단계 : 진행자는 조별 역할에 따라 게임의 준비물, 즉 심이 부러진 연필 1자루, 연필깎이 1개, 그리고 빈 종이카드 20장을 지급한다. 단 관찰조에게는,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와 펜을 지급한다.

3. 임무 및 진행순서 소개 단계 :

- 각 조의 임무는 어떻게 하면 연필표시가 되어있는 메모지를 가능하면 많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자신들이 방금 지급받은 것, 즉 심이 부러진 연필 1자루, 연필깎이 1개, 그리고 빈 종이카드 20장으로 제한한다.
- 어떻게 하면 다른 조 보다 많은 종이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다른 조와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 만약 4개의 조로 편성이 된 경우라면, 4번째 조는 진행단계를 잘 관찰하고 기록하였다가 요청이 있을 때 관찰한 바와 함께 소감이나 느낌을 발표하면 된다.